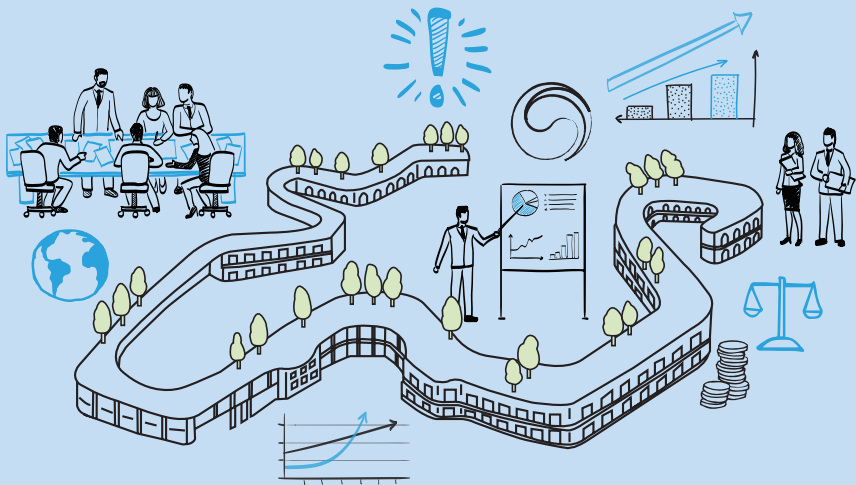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7



발간사

많은 국민들이 매년 발표되는 국가 부채 금액이 얼마인지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재정운동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지만, 정작 국가회계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국가회계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7」은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정부가 발생주의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지 어느덧 6년 차를 맞이하였고, 국가회계는 안정적 정착을 넘어 제2의 도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회계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가 국가 재정 의사결정의 여러 분야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7」은 5주년 기념으로 2016년에 발간되었던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6」에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도입으로 인한 향후 기대효과와 해외 발생주의 도입국가의 활용사례 등을 추가함으로써 국가회계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회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에 보다 익숙한 국민들을 위해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주요 차이를 설명하고, 낯선 국가 결산 과정,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국가회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발간된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7」이 국가회계에 관심을 가지고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오랜 시간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국가회계팀 구성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정도진

Government Accounting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별첨

제 1 장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다지기 06

제 2 장

국가 회계제도
이해하기 20

제 3 장

국가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38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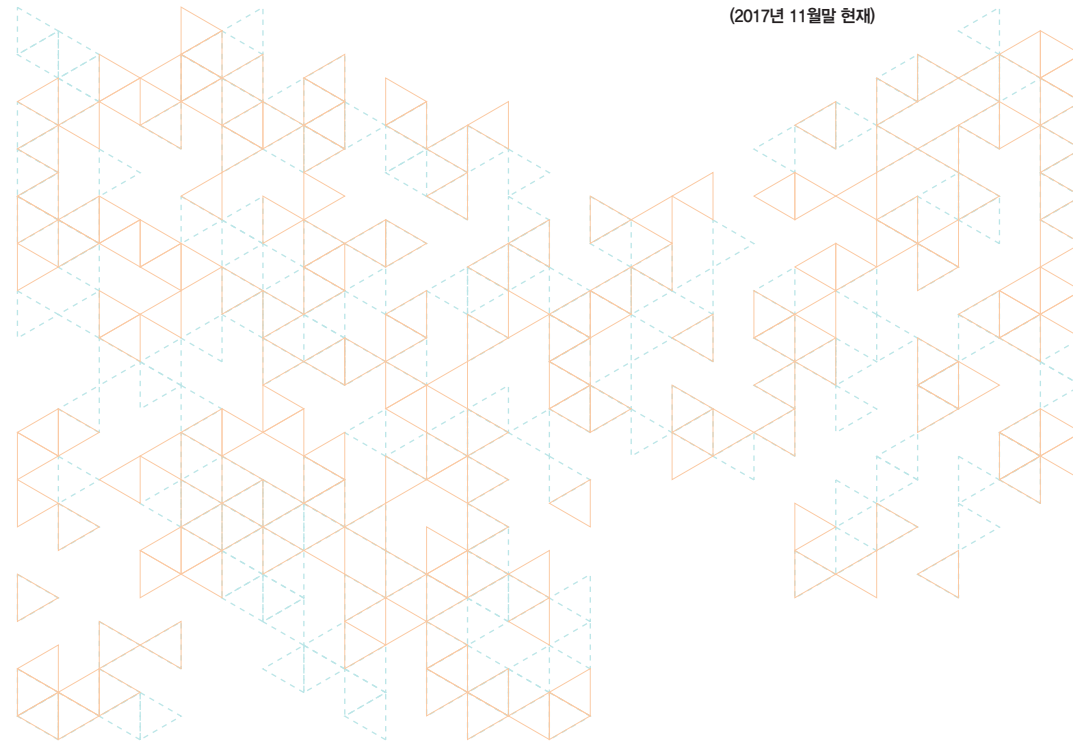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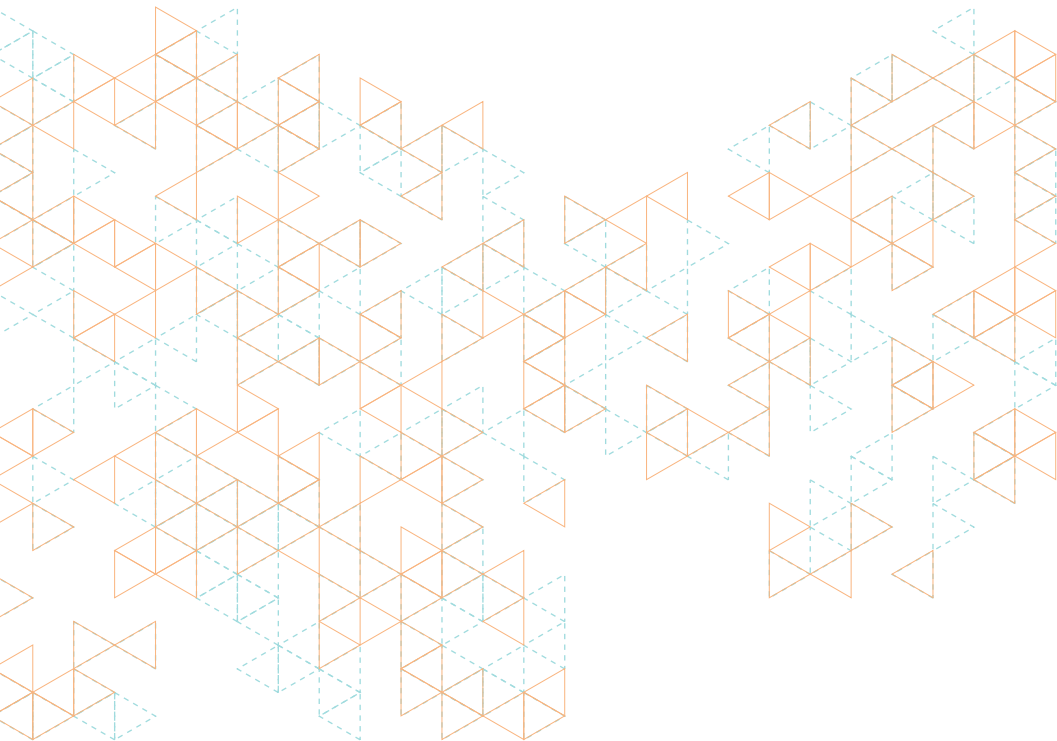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60

제 5 장

기타 특수한
회계처리 98

2016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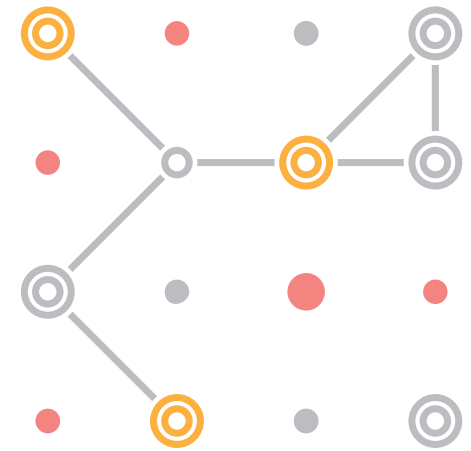
국가회계실체 현황
(2017년 11월말 현재) 113



Government Accounting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다지기





1. 발생주의란 무엇인가요?

- 발생주의란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인 현금주의와 상대되는 기록 방식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가정에서 외상(카드결제)으로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 발생주의 방식의 회계처리는 외상(카드결제) 구매 시 거래를 기록하지만, 현금주의 방식의 회계처리는 외상(카드결제)을 현금으로 갚을 때 거래를 기록하게 됩니다.
- 이러한 이유로 현금주의 회계기록은 한 회계기간 내에 일어난 경제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가정보다 더 큰 규모의 기업이나 정부의 경우 더 많은 차이와 오류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나 정부에서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 재무정보를 산출하고 활용한다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자칫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방식을 통하여 회계처리 할 경우 보다 정확한 정보의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적절한 성과 평가 및 미래 예측이 가능해지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이동에 관계없이 향후 자산·부채의 변동이 있을 것이 확실할 때 거래를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회계기간에 일어난 거래를 현금주의 방식에 비해 정확하게 기록하게 되겠죠?

그림 1-1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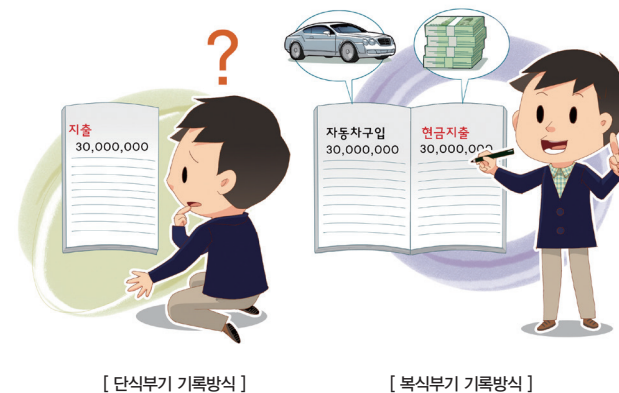


2. 복식부기란 무엇인가요?

- 복식부기란 거래 발생 시 동시에 기록을 두 번(차변과 대변)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지 않고 재산의 증감만을 기록하며 손익의 기록을 하지 않는 방식인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 예를 들어,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는 현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결과 자산(자동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록하게 되지만, 단식부기는 현금 지출만을 기록하게 됩니다.
- 따라서 복식부기는 자산을 명칭별로 분류하고 기록하므로 자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단식부기의 경우에는 자산대장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는 한 현금출납기록을 일일이 파악하여 자산 현황을 다시 산출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양쪽으로 기록합니다. 사례에서처럼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지출했다는 기록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림 1-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3.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경과를 알고 싶어요

- 발생주의·복식주의 정부회계 도입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간부문인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회계투명성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던 외환금융위기는 경제사회 각 부문과 공공부문에 있어서 투명성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제공한 IMF와 세계은행은 우리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정합성을 가진 회계기준을 민간전문기구가 제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공공부문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IMF의 권고사항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및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998년 초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 인수위원회는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 도입을 포함시켰습니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5월 정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의 도입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 이후 재정경제부 국고국에서 2003년까지 모든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정부회계제도 개편방향'이 마련되어 진행되었지만, 행정부 내부에서 제도의 정비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등에 예상 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2003년 도입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 하지만, 2003년에 다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로 삼아 추진하게 되었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감사원 등 범(凡)정부적 노력을 통해 국가회계법의 제정(2007년), 국가회계기준의 마련(2009년)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2007년) 등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의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국가재정법 부칙에 따라 2년간(2009~2010회계연도)의 시범적용 기간을 거친 후 2011회계연도 중앙관서 및 국가 재무제표를 2012년 5월에 최초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2014년에는 기존 회계준칙과 회계처리지침을 통폐합하고 서술방법을 문단 식으로 정비하는 등 국가회계규정의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림 1-3 발생주의 도입 경과

1998	1998년 재정경제부 국고국에서 2003년까지 모든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정부회계제도 개편방향' 마련
2003	2003년에 다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로 삼아 추진
2007	국가회계법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2009	2009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를 전면 도입
2010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2	국가재무제표 최초 국회 제출
2014	국가회계제도 체계 정비(국가회계편람 발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3~2006년 시범운영을 통해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표 1-1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현황

구분	현황
국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2006.10.) 및 시행령(2006.12.) 제정 • 국가회계법 제정(2007.10.), 시행(2009.1.) • 2009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 2년간 시범운영(2009~2010) • 2011~2016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회 제출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간 시범운영(2003~2006) • 지방재정법(2005.8.) 및 시행령(2005.12.) 제정 •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시행 •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첨부하여 지방의회 제출 • 지방회계법 제정(2016.5.), 시행(2016.11.)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도입(공기업은 2011년, 준정부기관은 2013년 도입) •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4.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도입 효과는 무엇인가요?

(1)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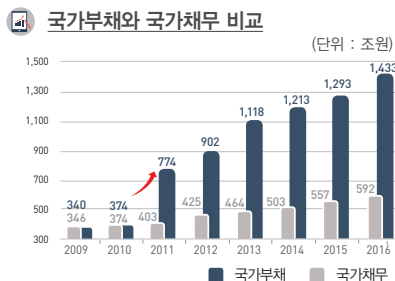
- 종전의 세입세출 결산의 경우 계약에 의한 국가채무만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채무의 예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인데 모두 계약에 따라 향후 재정지출이 확정된 채무입니다. 이러한 채무를 관심 있게 관리하여야 하는 이유는 채무상환 일정에 맞추어 재정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가 지급불능 상태가 될 수 있고, 이는 국가 신인도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이런 채무만을 관리하다 보면 지출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부채(회계용어로는 총당부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잠재부채의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총당부채가 있는데 종전 방식에서는 산출되지 않고 있어 재정지출 규모 결정 시 총당부채가 고려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반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연금총당부채 등 향후 재정지출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계상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미래 재정부담능력을 예측하여,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라 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15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촉발되었습니다.



지출규모나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향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총당부채를 인식하여 이를 기초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림 1-4 발생주의 도입효과 -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 자료출처: 2009~2016년 국가결산보고서 및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015회계연도 연금개혁 효과



* 자료출처: 2015년 국가결산보고서 상 연금보고서

(2) 국가자산 관리 체계의 강화

- 종전의 국가자산 관리 체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과 건설중인자산을 대부분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결산에서는 제외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 하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자산 관리 체계에서는 국가가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결산에 포함하여 관리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건설중인 자산도 투입된 자원의 가치만큼 자산으로 기록하여 관리가 강화되며, 도로·하천·댐·공항·항만·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도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 재무제표에 기록된 자산들은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주기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치, 현재 자산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과거에는 건설비 지출 연도에만 건설비 지출액이 세입세출결산서에 보고가 되었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후에는 건설 이후에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며, 도난 및 파괴 등으로 자산에 물리적 손실이 발생하면 재무제표에 해당 손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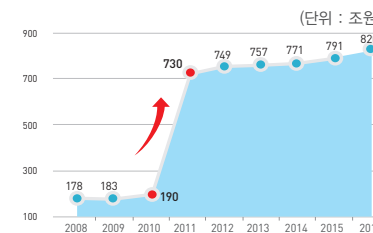


국가가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결산에 포함하여 관리하므로 자산을 누락 없이 기록하고,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5 발생주의 도입효과 - 국가의 숨어 있는 자산을 찾아내어 모든 국가자산을 관리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총자산 중 국유재산(유가증권 제외) 금액 변화



* 자료출처: 2008~2016년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총자산 및 국유재산(유가증권 제외) 금액 변화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자산	1,525	1,580	1,666	1,759	1,856	1,967
국유재산 (유가증권 제외)	730	749	757	771	791	820

* 자료출처: 2011~2016년 국가결산보고서 및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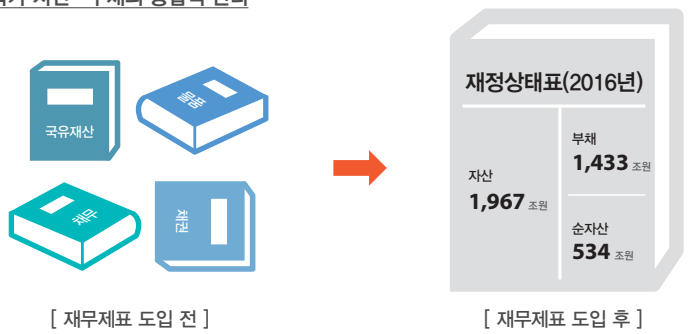
(3)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리

- 종전의 세입세출 결산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로 전체 국가 자산·부채 규모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 예를 들어, “국가자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자산 유형별(국유재산, 물품, 채권)로 금액을 파악하여야 했습니다. 이마저도 관련 금액이 기록된 보고서들이 복식부기 방식처럼 거래 발생 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장부로 기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서 재정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종류별로 금액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가자산·부채 규모 등 국가재정의 전체모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별 보고서에서 관리하던 국가 자산·부채 내역 및 금액을 한눈에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6 발생주의 도입효과 - 나라살림을 한눈에 파악하여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 자산·부채의 종합적 관리



* 자료출처: 2016년 국가결산보고서

(4) 국제 비교가능성 제고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채택 이전에는 해외 주요국과의 재정상태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표 1-2 주요국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시기

국 가	뉴질랜드	호 주	미 국	영 국	캐나다	한 국
도입연도	1993	1994	1998	2002	2003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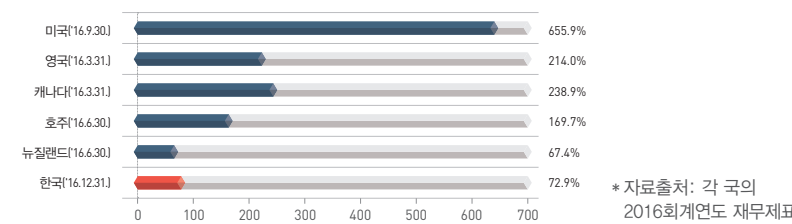
* 자료출처: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2012)

- 나라별로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상이하여 회계처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산출된 수치의 비교를 통하여 국가재정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16회계연도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한국, 뉴질랜드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 또한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회계정보가 생산됨에 따라 최신 국제기준(GFSM 2001 및 PSDS 등)에 따른 재정통계의 산출이 가능해지면서 비교 가능성 및 대외 신뢰도가 제고되었습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서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한 국가 재정건전성 평가가 가능해졌고, 그 결과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7 발생주의 도입효과 -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국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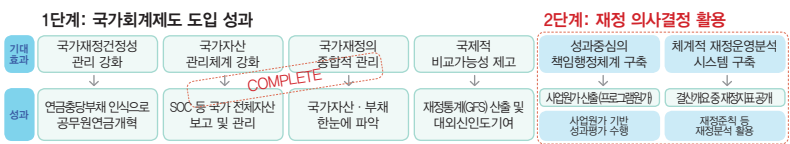




5.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도입으로 인한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 의사결정 등에 활용되어 성과중심 책임행정체계 및 재정운영분석 시스템 구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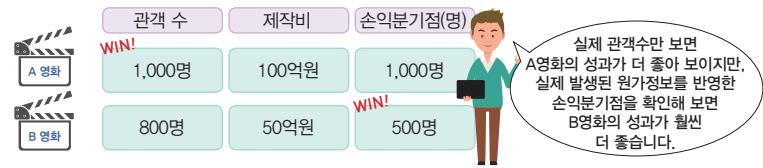
그림 1-8 국가회계 발생주의 제도 도입 기대효과와 성과



(1)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계 구축

- 국가는 정책적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정책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어 성과평가를 수행합니다.
- 국가의 정책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할 때 단순히 교육생 수, 박물관 방문자 수 등의 결과만 고려하는 경우 진정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계 구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천만 관객 영화라 해도 제작비에 따라 영화의 수익성이 매우 다르므로, 단순히 관객 수만으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 방문자 수, 용자이용률, 만족도 등과 같은 사업결과에 발생주의 정보인 사업원가정보, 용자보조비용이나 수익정보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편익분석이 가능하여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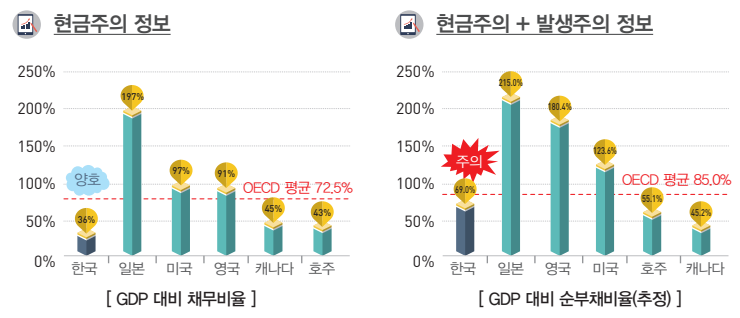
그림 1-9 향후 기대효과 - 국가의 정책 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체계적 재정운영분석 시스템 구축

- 우리가 미래를 위해 재무계획을 세우듯이 국가도 미래의 재정운영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재정위기를 방지하고자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운영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제시하여 장기적인 재정운영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GDP 대비 채무비율' 등 현금주의 정보입니다.
- 재정준칙과 같은 재정운영분석 시스템을 마련할 때, 채무정보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부담을 모두 고려하는 총당부채 정보와 자산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주의 재정준칙에 추가적으로 발생주의 정보(예: 'GDP 대비 순부채비율' 정보)를 활용한다면 재정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신호(signal)를 제공하여 '재정건전성 조기경보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그림 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대비 채무비율'의 경우 OECD 가입국의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GDP 대비 순부채비율'의 경우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관리가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림 1-10 향후 기대효과 - 현금주의 정보에 추가적으로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면, 체계적인 재정운영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6.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국가 현황을 알고 싶어요

-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의 재정적자 누적 및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며, 특히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뉴질랜드와 영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 효율적 재정운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동안 이익 창출을 위한 자산의 효율적 사용을 추구하는 기업의 회계방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 2016년 말 현재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는 이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채택(25개국)하였으며, 기타 국가들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처럼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건전성을 통한 국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되어 주요 국가에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림 1-11 세계 주요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현황



* 자료출처: The 2016 OECD Accruals Survey(OECD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 division에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7. 해외 발생주의 도입국가의 활용사례를 알고 싶어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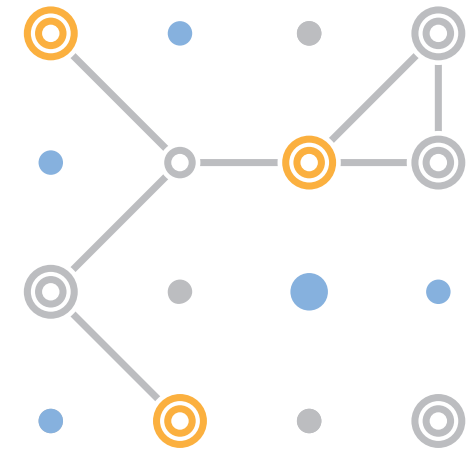
- 해외에서도 여러 주요 국가들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재정에 대한 이해, 장기재정건전성 평가, 성과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호주, 프랑스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재정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정보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결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재무제표상 주요 수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요약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영국은 현금주의 재정목표와 함께 발생주의 재정목표인 '공공부문순채무(PSND: Public Sector Net Debt)'를 사용하여 장기재정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부문순채무(PSND)는 공공부문의 총채무에서 유동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영국은 2017년도부터 2년 주기로 재정위험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정부 통합 재무제표(WGA)를 통해 보고·평가되고 있는 연금, 원전해체, 소송, 보증, 금융 부문의 부채 등을 위험요소에 포함하여 보고할 예정입니다.
- 일본과 호주의 경우 성과평가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부처별로 선정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기반의 원가를 산출한 '정책단위원가정보(Policy Unit Cost Information)'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호주는 원가회수 대상 정부 서비스의 적정 원가를 발생주의 개념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요금 부과 체계 및 원가 회수 정책(Charging Framework and Cost Recovery Policy)'을 공식 지침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OECD,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 연구·분석」, 2017.8. 참고

Government Accounting



국가 회계제도
이해하기



1. 국가회계기준이란 무엇인가요?

- 국가회계기준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지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을 말합니다.

2. 발생주의 국가회계법령의 체계를 알고 싶어요

-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체계는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령인 국가회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회계법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근거법이며, 국가회계기준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일부 회계처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2개의 국가회계예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 국가회계예규는 실무자들의 이해 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편람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회계편람의 경우 본문(예규규정)과 부록(문단제정근거, 실무해설, 적용사례 등을 포함)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림 2-1 국가회계편람



(*) 국가회계편람은 기획재정부 법령자료실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 2-2 국가회계법령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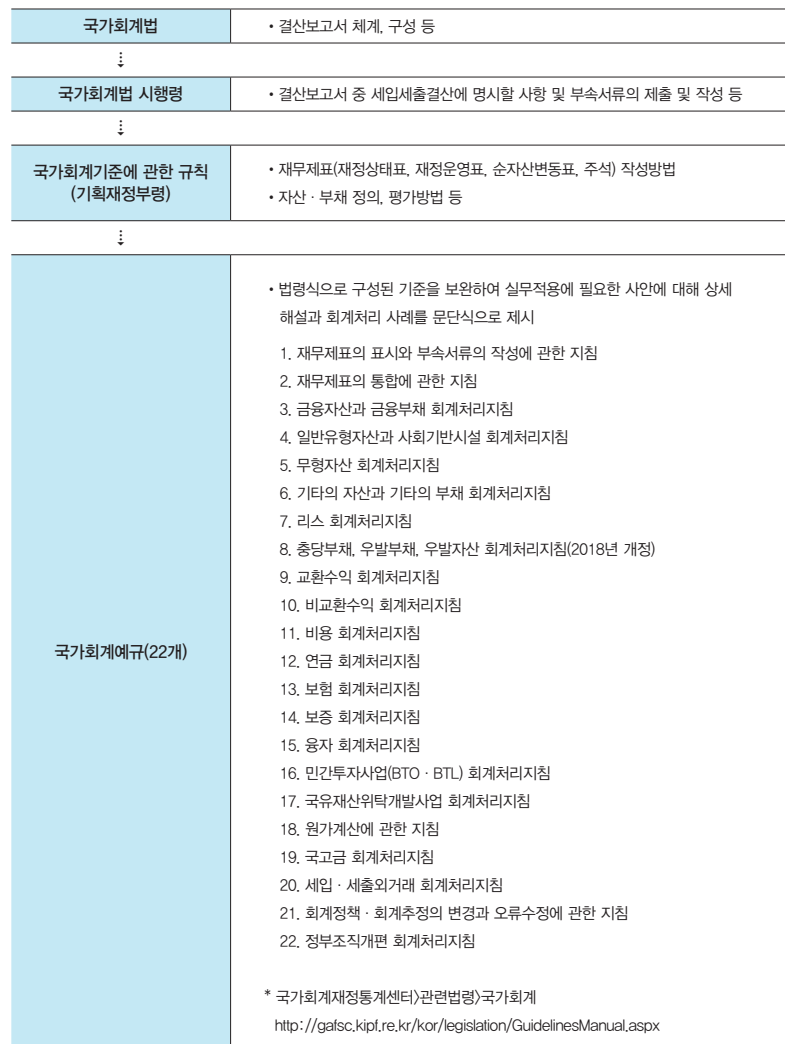




표 2-1 국가회계예규 주요 내용

국가회계예규	주요 내용
1.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의 작성과 표시
2.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사항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최초 인식, 인식 후 평가, 제거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최초인식, 감가상각, 재평가 등
5.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무형자산의 분류, 최초 인식, 상각 등
6.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채고자산, 저장품, 선급금, 선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회계처리
7. 리스 회계처리지침	리스의 분류기준 및 세부 회계처리
8.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2018년 개정)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9.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교환수익의 분류 및 회계처리
10.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비교환수익의 분류 및 회계처리
11. 비용 회계처리지침	비용의 분류 및 회계처리
12. 연금 회계처리지침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13. 보험 회계처리지침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14. 보증 회계처리지침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15. 용자 회계처리지침	용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 및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
16.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유형별 회계처리
17.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 등
18.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원가계산에 대한 구체적 사항
19.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국고금회계의 특성 및 회계처리
20.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세입세출외거래 유형과 회계처리 등
21.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회계정책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세부사항
22.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정부조직 개편 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이관 등 회계처리와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 국가결산제도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각각의 법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재정법은 국가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재정운용의 일반 원칙 및 예산편성·예산집행·성과관리·결산·국가채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과 관련해서는 결산보고서 작성·제출절차 및 일정을 규정하고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회계법은 국가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법으로 국가회계의 처리기준과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2-2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의 결산관련 규정

구분	내용
국가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 절차 및 일정을 규정 중앙관서결산보고서 → 국가결산보고서 → 감사원검사 → 국회제출 (2월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 * 국가재정법 '제3장 결산'에 명시
국가회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회계의 원칙, 회계책임관의 임명,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회계 제도 인프라 규정 • 국가회계기준(기획재정부령)의 근거 마련 •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작성(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4.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을 알고 싶어요

-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됩니다.
- 결산 개요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작성됩니다. 특히, 재무결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자산, 부채, 재정운영결과를 요약한 표와 간략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 세입세출결산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대비 실제 집행 결과를 비교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전부터 현금주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왔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결산서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제도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승인된 예산 대비 사용 실적을 비교하는 보고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되며, 국가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됩니다.
- 성과보고서는 각 부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사업)에 대해 사전에 정한 성과목표 대비 달성한 실적을 비교하여 보고하는 서류이며,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더불어 시행되었습니다.



표 2-3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구성서류	작성방법
결산 개요	결산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세입세출결산 (기금은 수입지출결산)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그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5.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란 무엇인가요?

- 결산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가회계법에서는 결산보고서별로 부속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로 구성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4가지 부속서류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이전부터 작성하고 있는 현금주의 기반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 현금주의 예산제도에서도 회계연도 말(12월 31일)까지 받지 못하는 채권 또는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승인된 예산을 지출하여 비품을 사고, 건물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현금주의 예산제도에서도 국가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 또는 채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관리하는 보고서가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인 것입니다.



표 2-4 결산보고서별 부속서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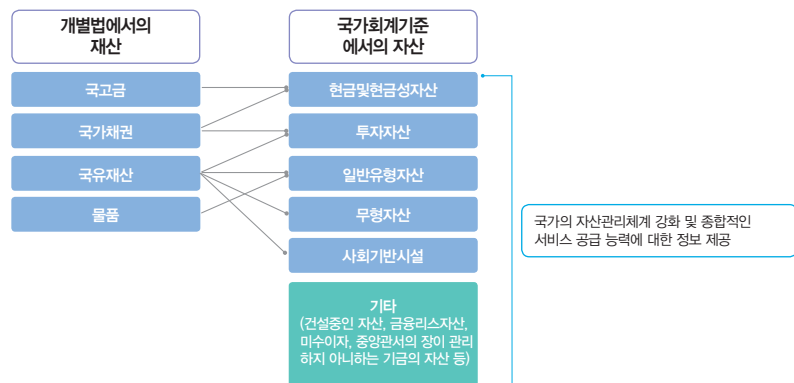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결산명세서, 세입세출결산 사업별명세서,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수입 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이월명세서,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성인지결산서, 예비금 사용명세서, 현물출자명세서,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등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재원조성실적표, 성인지 기금결산서 등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	통합재정수지표,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재무제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6. 재산과 자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국가가 소유한 재산은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국고금, 국가채권, 국유재산, 물품 등이 있습니다.
- 발생주의에서 말하는 자산은 건설중인자산, 미수이자, 선급금 등 발생주의 항목을 추가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국가 재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법령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상이라 해도 민간이 관리하는 기금(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이 보유한 자산은 국가의 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자산에 포함됩니다.
-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중인자산 및 민간이 관리하는 기금의 자산 등에 대한 정보가 발생주의 하에 국가 자산으로 보고됨으로써, 국가의 자산관리체계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 공급 능력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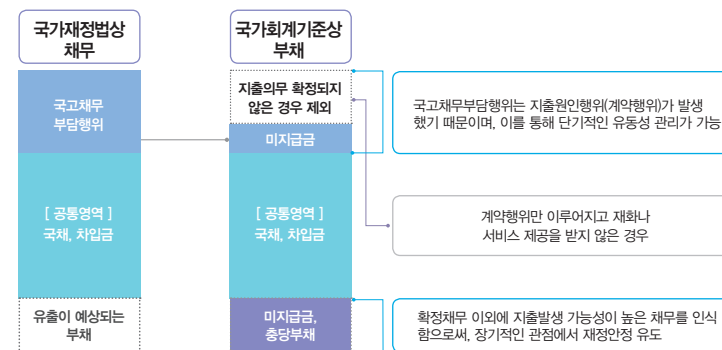
그림 2-3 재산과 자산



7. 채무와 부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전에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왔습니다.
- 국채는 국가가 공공서비스 재원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며, 차입금은 빌린 돈입니다.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향후 국고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향후 현금지출 예상액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채무로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채무는 계약에 따라 지출이 확정된 거래로서 발생주의에서 말하는 부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생주의 정보에는 미지급비용과 같은 기간경과성 부채나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계약행위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아 지출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발생주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림 2-4 채무와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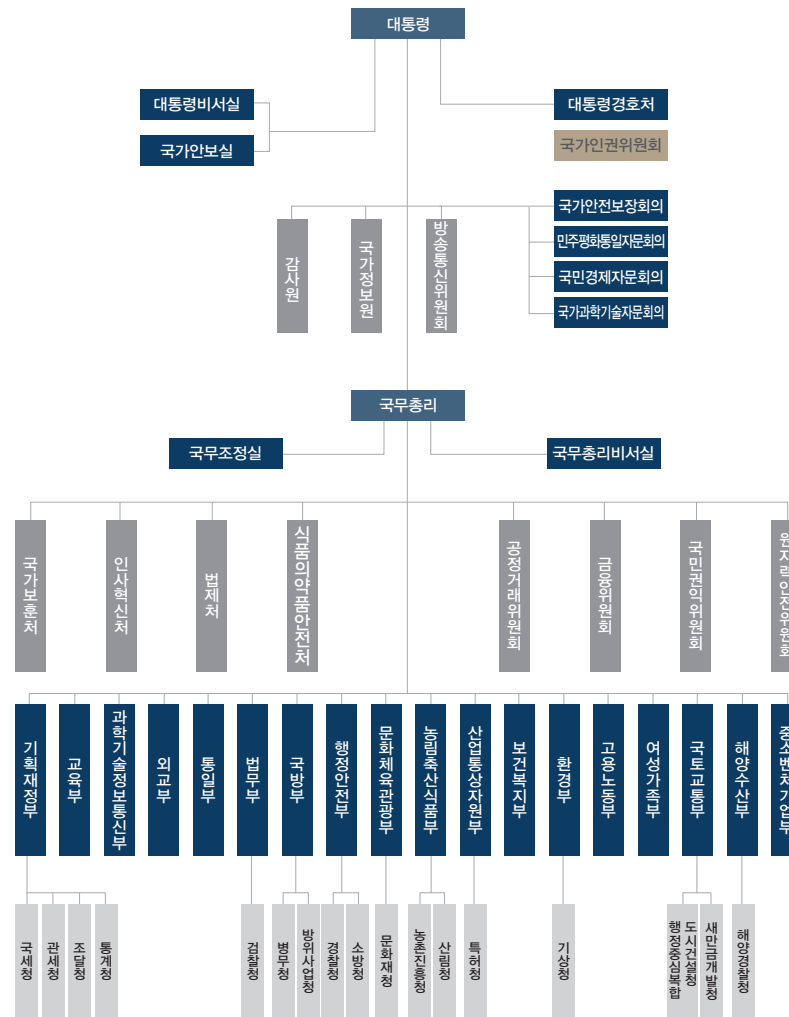
8.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적용대상을 알고 싶어요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는 국가회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모든 회계(일반·특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일반회계란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 회계입니다. 2017년 1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55개 정부부처별로 하나의 일반회계 또는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또한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으로서 2017년 11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총 67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적용대상인 전체 국가회계실체는 별첨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조직도상 정부부처 이외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회계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됩니다.(2017년 11월말 기준)

그림 2-5 정부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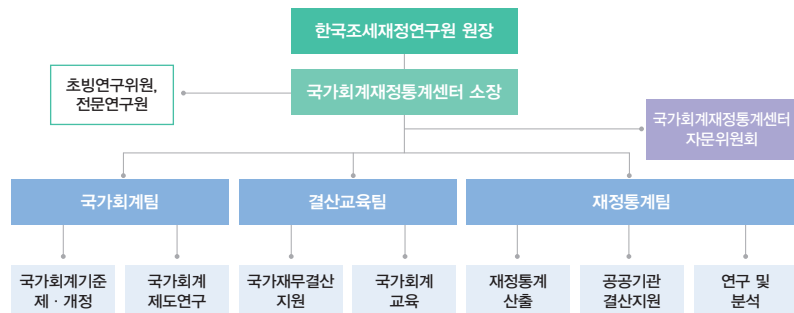
* 자료출처: 정부24)정책·정보)기관정보)정부조직도
<https://www.gov.kr/portal/orgInfo>

9.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운영 체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0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국가회계기준센터로 출범하였으며, 2014년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기능이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조직은 센터 소장 및 3개 팀(국가회계팀, 결산교육팀, 재정통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회계팀은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결산교육팀은 국가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국가회계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재정통계팀은 국제기준(GFSM 2001 및 PSDS 등)에 따른 재정통계 산출 및 연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결산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림 2-6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조직도



(2)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 국가회계법 제8조에 따라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위원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공무원과 회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는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 회계제도의 연계 등에 대해 심의합니다.

(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문위원회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회계자문위원회와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소장, 위원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5급 이상 공무원, 회계 학계와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회계학전공 교수 및 공인회계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위촉합니다.
- 자문위원회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자문활동과 기타 업무수행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10.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주요 차이는 무엇인가요?

(1) 재무제표 체계 비교

- 국가회계의 재무제표인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은 각각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과 유사합니다. 또한, 기업회계에서 작성하는 현금흐름표의 경우 국가회계에는 이와 유사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를 작성하여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회계의 재정운영표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는 구조이고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구조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 이러한 차이는 국가와 기업의 운영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배분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 등의 정보가 중요하나, 국가는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얼마의 비용(재정운영순원가)을 들여 수행하고 있는지의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거래 유형의 비교

- 거래는 교환거래(exchange transaction)와 비교환거래(non-exchange transaction)로 구분되는데,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직접적인 대가를 수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기업은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현금 등을 받는 교환거래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국가의 많은 활동은 비교환거래로 이루어집니다. 국가는 기업과 같이 상품 등을 판매한 대가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징수하고, 국방이나 복지과 같은 공공서비스 역시 받은 세금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비용, 자산·부채는 국가 역시 기업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비교환거래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확정', '회피불가능한 의무' 등의 공공부문 특성에 따른 별도의 개념과 근거에 따라 회계처리 합니다.

(3) 국가의 특수한 자산

- 국가는 현금, 유가증권, 유·무형자산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F-16 전투기, 경복궁 등과 같은 자산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각각 사회기반시설, 전비품, 유산자산 등으로 구분되며, 유산자산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형성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로 건설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및 댐 등의 자산으로 국가의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이 중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수선유지비를 '감가상각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 등 특수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전비품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제작된 전문적인 군사장비 및 탄약 등을 의미합니다. 전비품은 일반적인 자산과 같이 인식하나,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유산자산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며, 신뢰성 있는 가액의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자산·부채 평가 차이

- 기업회계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나, 국가회계는 투자목적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만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는 등 일부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 국가회계는 기업회계와 달리 차입원가자본화, 지분법 평가, 이연법인세평가 등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에 없는 정책적 목적의 저리 융자금에 대한 보조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융자보조원가'를 산정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특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고 관리·유지비용을 감가상각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감가상각대체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 2-5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주요 차이 비교

구분	국가회계	기업회계
목적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원가 제공	경영활동을 통한 이윤추구 → 당기순이익 제공
재무제표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식 재정운영표: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현금흐름정보는 필수보충정보로 제공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수익-비용) 현금흐름정보는 재무제표로 제공(현금흐름표)
거래 유형	교환거래, 비교환거래 모두 발생	교환거래
자산 정의 차이	경제적 효익 창출 및 공공서비스 잠재력 모두 고려	경제적 효익 창출 고려
국가회계의 특수자산	사회기반시설, 전비품: 재무제표 인식 유산자산: 재무제표 미인식	해당 없음
유가증권 평가	취득원가(또는 상각후원가) 원칙	공정가치 평가 원칙
기타 회계처리 차이	허용하지 않음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 감가상각대체	차입원가자본화, 지분법 평가, 이연법인세평가 해당 없음



그림 2-7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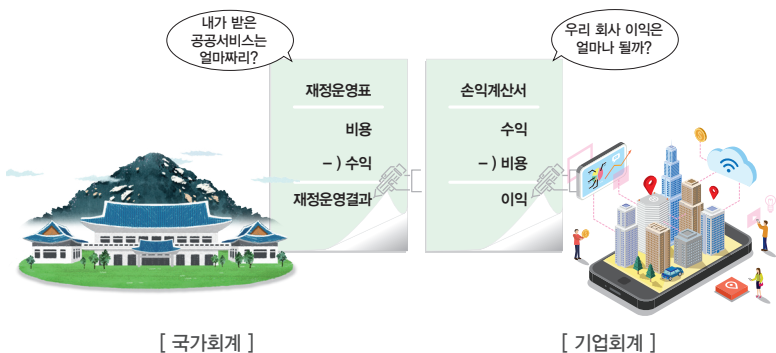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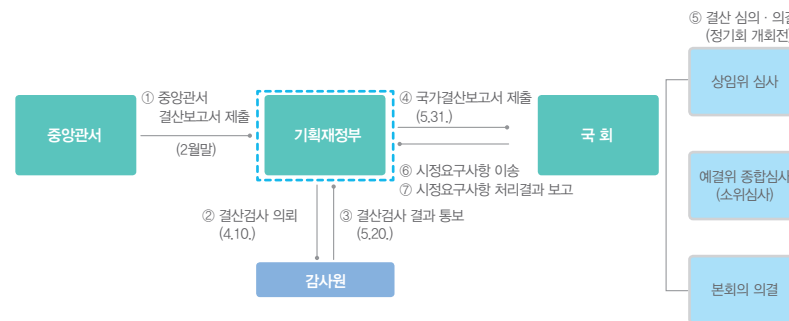


그림 2-8 국가 결산 과정



* 자료출처: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결산개요 및 2016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III)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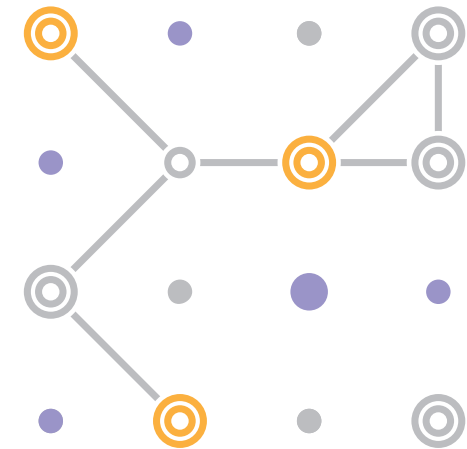
11. 국가 결산 과정을 알고 싶어요

-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중앙관서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집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가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면 결산절차가 종료됩니다.

Government Accounting



국가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1. 국가 재무제표의 종류를 알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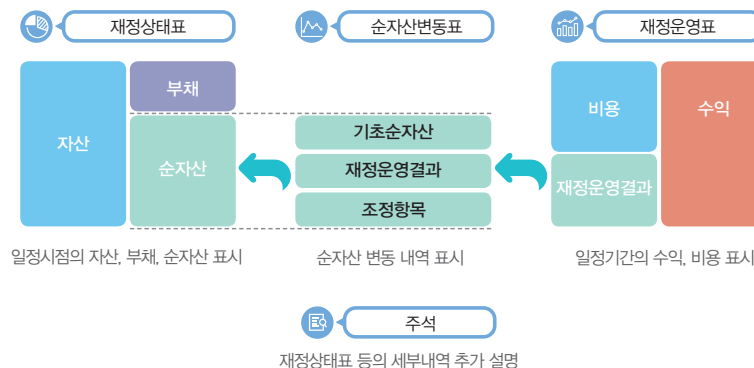
- 국가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 재정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보고서로서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유사합니다. 재정상태표를 통해 자산과 부채의 구성 현황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재정상태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 재정운영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대응되는 보고서로 일정기간의 수익, 비용 현황을 보여주며, 특히 프로그램별 원가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기업의 자본변동표와 유사합니다.
-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 각 부처는 중앙관서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국가는 이러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의 종류)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그림 3-1 재무제표의 관계



국가 재무제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 재무제표는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홈페이지 또는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열린재정: 재정 통계>상세 재정통계>중앙정부>결산>국가결산보고서
(<https://www.openfiscaldata.go.kr/fdata/0XY022UGD797MPMB69615678266>)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무정보>국가재무제표
(<http://gafsc.kipf.re.kr/kor/finance/Explanation.aspx>)

2. 재정상태표는 무엇인가요?

- 재정상태표는 기업에서 말하는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를 말합니다.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낸 재무제표로서, 재정상태표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재정상태표일 기준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구성현황 및 규모(금액)를 알려줍니다.
- 재정상태표는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통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산 총액과 부채 및 순자산의 합계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림 3-2 2016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조원)

재정상태표(2016년)		구 분	'15년(A)	'16년(B)	증감액 (B-A)
자산 1,967 조원	부채 1,433 조원	자 산	1,856	1,967	111
		유동자산	353	368	15
		투자자산	665	727	62
		일반유형자산	523	543	20
		사회기반시설	306	319	13
	순자산 534 조원	무형자산	1	1	-
		기타비유동자산	8	9	1
		부 채	1,293	1,433	140
		유동부채	133	137	4
		장기차입부채	421	456	35
	장기충당부채	708	806	98	
	기타비유동부채	31	34	3	
	순 자 산	563	534	-29	

* 자료출처: 2016년 국가결산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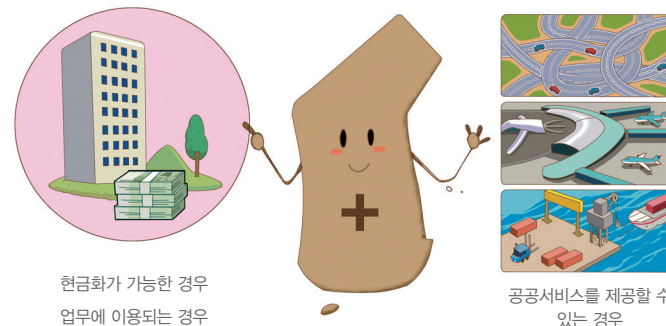
3. 자산의 정의, 종류 및 표시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국가회계에서 자산은 국가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①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②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는 ①에 해당하는 경우만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국가회계에서는 ②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도로, 공항, 항만 등)이 자산에 포함되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표시됩니다.



국가의 자산은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업무에 이용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도 포함됩니다.

그림 3-3 자산으로 기록되는 기준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업무에 이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국가회계의 특성]

- 자산은 재정상태표상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표 3-1 재정상태표 상 자산의 종류 및 설명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및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무형자산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 재정상태표상 자산의 표시는 유동성 배열과 총액주의 원칙입니다. 유동성 배열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상태표를 유동성 배열에 따라 작성하면 유동자산을 1년 후에 현금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과 구분 표시함으로써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총액주의는 관련되는 상대항목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 그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여금의 경우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대여금과 대손충당금 금액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부채의 정의, 종류 및 표시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국가회계에서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 부채는 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지출이 확정된 채무 뿐만 아니라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도 포함합니다.
- 따라서 국채 등과 같이 계약에 따라 금전적 지불의무가 있는 채무 뿐만 아니라 총당부채와 같은 잠재부채도 국가의 부채로 인식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재정건정성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국가의 부채는 금전적 지불의무가 있는 채무 뿐만 아니라 총당부채와 같은 잠재부채도 부채로 인식합니다.

-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총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국가의 부채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국·공채, 차입금, 미지급금 및 선수수의 등과 총당부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 3-2 재정상태표상 부채의 종류 및 설명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부채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확정부채로서,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장기차입부채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장기총당부채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총당부채, 연금총당부채, 보험총당부채 및 기타장기총당부채 등을 말한다.
기타비유동부채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로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총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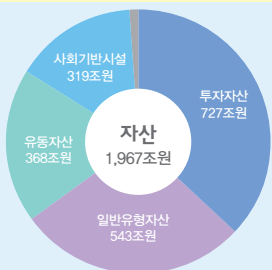
- 재정상태표상 부채의 표시도 유동성 배열로 1년 이내 지출 예상분과 1년 초과 지출 예상분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2016회계연도 국가자산의 구성을 알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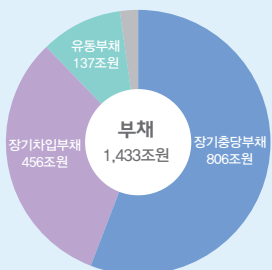
2016회계연도 국가자산은 총 1,967조원이며, 투자자산 727조원(37%), 일반유형 자산 543조원(28%), 유동자산 368조원(19%), 사회기반시설 319조원(1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국가부채의 구성을 알고 싶어요



2016회계연도 국가부채는 총 1,433조원이며, 장기충당부채 806조원(56%), 장기차입부채 456조원(32%), 유동부채 137조원(1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순자산의 의미와 구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재정상태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기업회계의 경우 자본이라고 불리며 기업의 소유권을 표시하는데 반해, 국가회계의 순자산은 잔여 자산의 성격입니다.
- 따라서, 순자산이 부(負)의 금액이 되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이며, 이는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넘겨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가회계에서 순자산은 부의 세대간 이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적용이 되었다면 기본순자산이 최초 연도 당시의 자산 금액으로 기록되었겠지만, 애석하게도 2009년 1월 1일부터 재무제표 작성이 시작되어 2009년 1월 1일 기준 잔여재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금과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적하여 발생한 적립금및잉여금을 차감하고 순자산조정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본순자산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재산으로 국가회계에서 순자산은 부의 세대간 이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표 3-3 순자산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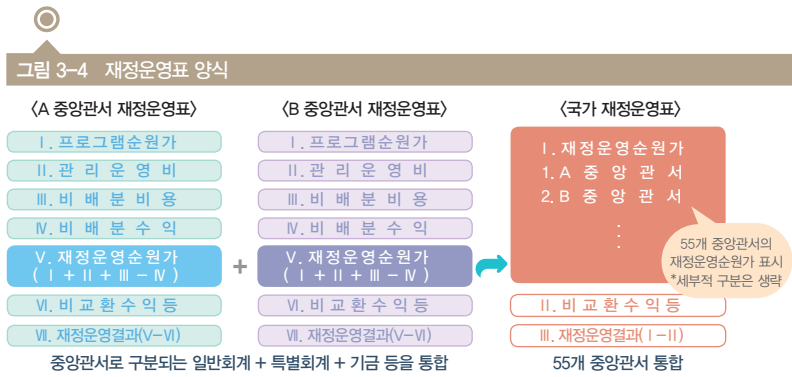
구분	설명
기본순자산	순자산에서 적립금및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적립금및잉여금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 결산시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결과가 적립금및잉여금에 반영된다.
순자산조정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않는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순자산의증감 등을 말한다.



6. 재정운영표의 정의 및 작성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재정운영표는 한 해 동안 나라가 살림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결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대비될 수 있는데 손익계산서와 달리 비용에서 수익을 빼서 재정운영결과를 보여줍니다.
- 국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된 순원가 즉, 재정운영결과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재정운영표의 양식을 개발하였습니다. 국가는 재원을 조달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을 지출하는데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재정운영표는 작성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양식이 달라집니다.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반면, 이를 통합한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이처럼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와 같이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따로 보여주지 않고 재정운영순원가를 중앙관서 별로 제시합니다.

 (기업 손익계산서) 이익 측정 목적
(국가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 산출 목적



7. 재정운영표의 각 항목의 의의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재정운영표는 국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사업)별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익을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수혜자가 지불한 수익(교환수익)인지 아니면 법령에 따라 납부한 수익(비교환수익)인지를 구분하여 직접수혜자와 일반납세자 부담분을 구분 표시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총원가는 국가가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원가로 프로그램별로 추적 및 배부가 가능한 직접원가 및 간접원가를 말합니다.
- 프로그램수익은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할 수익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수익에는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보험 및 보증수익,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 및 간접원가에서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합니다. 인건비는 급여 및 퇴직급여를 말하며, 경비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피복비와급량비, 지급임차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 비배분비용은 국가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비배분수익은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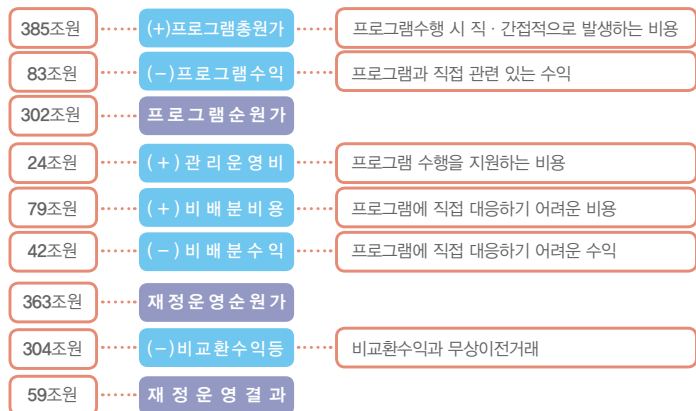
-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 수익을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 비교환수의 등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및 제재금 등의 수익과 순자산 증가 또는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접수혜자와 일반납세자 부담분을 구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3-5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표 요약



(*)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해를 위해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 양식으로 제시

8. 순자산변동표란 무엇인가요?

- 순자산변동표는 한 해 동안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하며, 기업회계에서 자본변동표와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즉, 전년도에 이미 보고된 기초순자산을 순자산의 구성요소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별로 증감 사유(오류수정이나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 당해연도의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그 외 조정항목들)를 가감하여 당해연도 기말순자산 금액을 나타내는 명세입니다.
- 다만, 중앙관서의 순자산변동표상에서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으로 인한 변동이 표시되지만, 국가의 순자산변동표에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나타나지 않고, 재정운영 결과에 포함됩니다.



순자산변동표는 한 해 동안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림 3-6 순자산변동표 양식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합 계	
I.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XX	XXX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		XXX		XXX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XXX		XXX	국가의 경우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재정운영 결과'에 포함됨
1. 재원의 조달		XXX		XXX	
(1) 국고수입		XXX		XXX	
(2) 부담금수익		XXX		XXX	
(3) 제재금수익		XXX		XXX	
(4) 기타비교환수익		XXX		XXX	
(5) 무상이전수입		XXX		XXX	
(6) 채무면제이익		XXX		XXX	
(7) 기타재원조달		XXX		XXX	
2. 재원의 이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XXX	
(2) 무상이전지출		XXX		XXX	
(3) 기타재원이전		XXX		XXX	
IV.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납입자본의 증감	XXX	-	-	XXX	
2. 투자증권평가손익	-	-	XXX	XXX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XXX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XX	XXX	XXX	XXX	
5. ...	XXX	XXX	XXX	XXX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XXX	XXX	XXX	XXX	



9. 순자산변동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앙관서의 순자산변동표는 추가로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 기초순자산은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사항 및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재정운영결과와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의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가가 재정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내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교환수익 내역과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내역이 포함됩니다. 국가의 순자산변동표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에 표시되고,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 조정항목에는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등과 같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어서 재정운영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과목이 포함됩니다.



표 3-4 순자산변동표의 구성요소

구 분	설 명
기초순자산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으로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사항이나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 등을 반영하여 조정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금액
재원의조달및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의 조달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인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비교환수익과 예산배정액의 실제 집행액을 의미하는 국고수입 •재원의 이전은 순자산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와 국고이전지출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예)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10. 주식이란 무엇인가요?

- 주식은 국민 등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 주식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이나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리고 중요한 정보나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재무적 정보가 포함됩니다.
-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외에 주식사항의 예로는 장기차입부채의 상환계획, 장기충당부채,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순자산조정명세 등이 있습니다.



표 3-5 주식의 구성 내역

구 분	주요내역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일반기준, 계정과목별 인식, 평가 기준 등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국·공채, 차입금 등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연금, 퇴직급여, 보험, 보증 등 충당부채 내역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외화별 자산 및 부채 내역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요한 계약사항,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우발사항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전기오류수정내역 및 회계정책, 추정 변경 내역
7. 순자산조정명세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순자산조정 증감명세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세입세출의 현금 및 거래, 자산재평가, 용자사업, 사회보험사업 등 주요내역



11.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중 부속명세서란 무엇인가요?

- 국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가 있습니다.
-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중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열거된 다음 회계과목의 세부적인 금액과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 3-6 부속명세서의 구성 내역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2. 금융상품명세서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1) 채무증권명세서 2)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명세서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1) 채무증권명세서 2)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명세서
5. 미수채권명세서	1) 단기미수채권명세서 2) 장기미수채권명세서
6. 대여금명세서	1) 단기대여금명세서 2) 장기대여금명세서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1) 일반유형자산 당해연도증감명세서 2) 일반유형자산 직전연도증감명세서 3) 일반유형자산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4) 금융리스자산명세서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명세서
8. 사회기반시설명세서	1) 사회기반시설 증감명세서 2)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명세서
9. 무형자산명세서	1) 무형자산 당해연도증감명세서 2) 무형자산 직전연도증감명세서
10. 국채및공채명세서	1) 단기국채및공채명세서 2) 장기국채및공채명세서
11. 차입금명세서	1) 단기차입금명세서 2) 장기차입금명세서 3)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4)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12. 출연비명세서	
13. 자원별원가명세서 (기금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에만 포함됨)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하는 것인데 반해,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12.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중 필수보충정보란 무엇인가요?

- 국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가 있습니다.
-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중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않지만,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필수보충정보는 유산자산의 종류·수량 및 관리상태, 연금보고서, 보험보고서, 사회보험보고서, 국제징수활동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등이 있습니다.



표 3-7 필수보충정보의 구성 내역

구분	설명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자산으로 관리하는 항목에 비하여 관리상 효율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를 별도의 명세로 작성하여 공시한다.
연금보고서, 보험보고서, 사회보험보고서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일반보험사업, 사회보험사업에 대해 재무제표에서 설명하지 못한 사항들을 추가로 설명한다. (예) 연금보고서의 연금총당부채 세부산출자료(혹은 장기재정추계) 등, 보험보고서의 보험총당부채 산출내역 등, 사회보험보고서의 사회보험부채 산출내역 및 준비금 등
국제징수활동표	국제징수활동표는 국가수입의 기간이 되는 국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징수할 회수가능 세금(국제수입)에 대한 정보와 실제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된 세금(국제수입)을 나타내는 명세서로서 국제 징수기관인 국제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다.
총잉여금·재정운영 결과조정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는 현금주의 예산결산의 산출물인 총잉여금(현금증감)과 발생주의 재무결산의 산출물인 재정운영결과(이익)의 차이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명세서를 말한다.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국가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원가의 성질별 구분에 따른 금액정보를 보여준다.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 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을 구성하는 수익·비용을 성질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나머지 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비용 등은 재무제표상의 재정운영표와 동일하다.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하천 토지 중 가격평가 제외 자산 현황, 국유재산 위탁 개발 사업 현황 등을 공시한다.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 유산자산은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말합니다.
- 유산자산은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높아지며, 매각할 목적의 자산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금액으로 표시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국가의 자산이긴 하지만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로 그 종류 및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자산에 계상되지 않는 유산자산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관리하여야 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무결산서의 필수보충정보로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필수보충정보의 주 작성 주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이 있습니다.



국보 1호인 남대문과 같은 문화재, 북한산 국립공원 등 국립공원, 우포늪 생태계특별 보호구역 등과 같은 보호구역이 유산자산에 해당됩니다.



표 3-8 유산자산 세부내역 및 관련 법령

유산자산 종류	세부 내역	관련 법령
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자연경관보호구역 등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 연금보고서, 보험보고서, 사회보험보고서

- 연금보고서의 작성대상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이며, 재무제표 이용자가 연금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금사업의 개요, 기금의 구성과 운용사항, 주요통계에 대한 정보를 공통적으로 제공합니다.
- 다만, 연금총당부채 산정 대상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연금총당부채의 평가 방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금총당부채 산정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경우 장기재정추계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표 3-9 연금보고서 주요 내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연금총당부채 산정 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연금총당부채 산정 대상 제외)
〈연금총당부채의 평가 방법과 결과〉	〈장기재정추계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총당부채 평가방식 •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내역과 산출근거 • 연금총당부채의 산정결과와 그에 대한 설명 • 회계연도별 연금총당부채의 변동원인과 그에 대한 설명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 연금총당부채 평가 관련 기타 주요사항 등 • 보험계리기관의 감사보고서(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재정추계 방법 •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내역과 산출근거 • 장기재정추계의 전망결과(수입, 지출, 재정수지, 기금적립금, 부양률, 기금적립배율 등 주요 지표)와 그에 대한 설명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 장기재정추계에 관련 기타 중요 사항 등

- 보험보고서의 작성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 무역보험 등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회계실체이며, 보험별 인수위험의 개요, 보험총당부채 산정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회보험보고서의 작성대상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임금채권보장 등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이며, 사회보험사업의 개요, 사회보험 사업의 자원조달 방법, 사회보험부채 산정 내역, 법정준비금 산정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3) 국세징수활동표

- 국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국세징수활동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한다고 해서 해당 세입을 부처의 수익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재정운영표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와 관련된 국세수익과 국세수입금액(현금수납액)의 회계처리를 별도의 보고서에 모으는 처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활동표가 만들어집니다. 국세징수활동표에는 당기의 국세수익과 국세수입금액이 나타나게 되며 국세 관련 채권에 따른 대손상각비 등 국세 관련 모든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 작성 주체인 세 부처(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에서 인식한 국세징수활동표상 금액 중 국세수입(현금수납액)은 국가통합 과정에서 내부거래로 제거되고, 국세수익은 재정운영표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통해 국가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표 3-10 2016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국세징수활동표

(단위 : 억원)

	당 기	전 기
I. 국세수익	16,794	16,941
(1) 국세수익발생금액	16,794	17,038
1. 인지세수익	5,085	4,957
2. 방위세수익	-	-
3. 교육세수익	16	15
4. 농어촌특별세수익	11,693	12,066
(2) 대손상각비	-	(97)
(3) 대손충당금환입	-	-
II. 처분	16,794	16,941
(1) 국고이전지출	5,101	4,972
(가) 총현금수입	5,101	4,976
1. 인지세수입	5,085	4,957
2. 방위세수입	-	-
3. 교육세수입	16	19
(나) 국세환급금	-	(4)
(2) 타회계이전	11,628	12,051
(3) 물납이전	-	-
(4) 미수국세의증감	(1)	(83)
(5) 대손충당금의증감	66	1
III. 차감 계	-	-

(4) 총잉여금 · 재정운영결과조정표

- 예산회계 결산상의 세입세출의 차액인 총잉여금과 재무제표상 비용과 수익의 차이인 재정운영결과는 서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인식기준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총잉여금과 재정운영결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총잉여금 · 재정운영결과조정표를 필수보충정보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차이항목으로는 크게 '자산 · 부채의 증감', '발생주의 기간수익 · 비용 차이'와 '순자산변동'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예산회계 결산의 결과치인 총잉여금과 재무회계 결산의 결과치인 재정운영결과간 차이 금액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수익 · 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프로그램별로 원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각 프로그램별 원가를 산출함으로써 특정 프로그램에서 소모된 자원 또는 원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양식입니다.
- 하지만 해당 양식은 프로그램총원가에 대한 비용의 성질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총원가가 1억원인 경우 해당 사업에 1억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그 1억원이 인건비인지, 용역비인지 혹은 수수료 인지는 알 수 없는 양식입니다.
- 따라서 수익 · 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필수보충정보로 작성함에 따라 프로그램 총원가에 인건비 혹은 용역비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비용별 비중을 파악하거나, 프로그램총원가와 관리운영비에 포함된 인건비 비고를 통하여 효율성 또는 정부 부처의 사업수행성과를 판단하는 기본자료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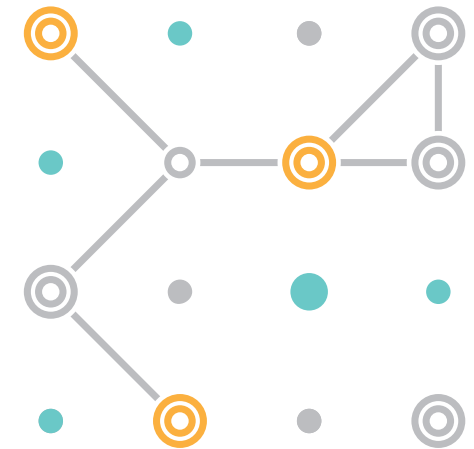
(6) 그 밖의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 외에도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하천 토지 중 가격평가 제외 대상 자산, 국유 재산 위탁개발사업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Government Accounting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01절 재정상태표

1. 유동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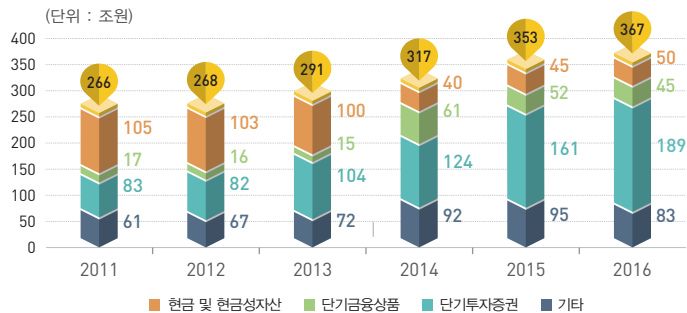
- 재정상태표 작성원칙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유동성 배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정상태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유동자산은 현금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자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동자산의 분류기준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 유동자산 등을 말하며, 국고금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포함되어 표시됩니다.
-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단기대여금은 앞에 '단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금융상품, 투자증권, 대여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 후에 회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장기'가 앞에 붙게 됩니다.



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림 4-1 연도별 유동자산 규모



* 기타: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기타유동자산

2. 투자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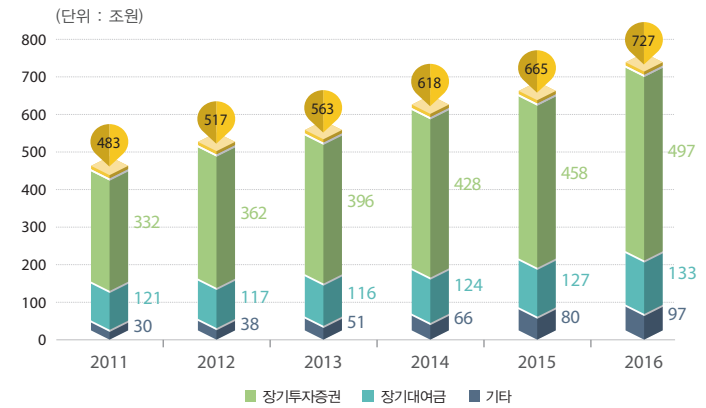
-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하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투자자산은 금융상품, 대여금, 투자증권 등 투자 또는 권리 행사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까지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림 4-2 연도별 투자자산 규모



* 기타: 장기금융상품, 기타투자자산



(1) 금융상품

-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에금, 정기적금 등으로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만기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유동자산에 표시하고, 만기 1년 초과인 금융상품과 질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등은 장기금융상품으로 투자자산에 표시합니다.

표 4-1 금융상품 계정과목 내역

금융상품	설 명
정기에금	예금주가 일정기간 환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증서 또는 통장을 발행, 교부하는 예금
정기적금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 후에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
기타의 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 어음관리구좌(CMA), 신중기업어음(Commercial Paper) 등

(2) 대여금

- 대여금은 유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으로 회수기일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은 단기대여금으로 유동자산에 표시하고, 회수기일이 1년 초과인 대여금은 장기대여금으로 투자자산에 표시합니다.

표 4-2 대여금 계정과목 내역

대여금	설 명	
전대차관 대여금	정부내전대차관 대여금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이 외국환은행 등 차관선으로부터 도입한 전대차관(계정분류상 "해외차입금") 중 다른 국가회계실체에 다시 대여한 자금
	정부외전대차관 대여금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이 외국환은행 등 차관선으로부터 도입한 전대차관(계정분류상 "해외차입금") 중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통화금융기관, 비통화 금융기관 및 기타 민간분야,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시 대여한 자금
정부내예탁금	전대차관대여금을 제외한 다른 국가회계실체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용자금	저리용자금	대여 당시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용자사업)에 해당하는 대여금
	일반용자금	저리용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 용자금의 경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하거나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국가가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용자보조비용'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하게 됩니다.
- 여기서 시장이자율은 보통 국채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용자보조원가란 결국 국가가 조달한 국채의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하게 됨으로써 이자율 차이만큼의 비용이 국가에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러한 이자율 차이를 단순히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차이로 재정운영표에 표시하는 것보다 차이금액을 '용자보조비용'으로 보여줌으로써 보조금 성격의 재정지출 파악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 용자금의 대손충당금(받지 못할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경우도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회수하지 못할 금액만큼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한 성격으로 보아 '용자보조비용'으로 기록합니다.

💡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용자하거나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을 표시하는 것이며, 용자금의 차감 항목입니다.

그림 4-3 용자금의 정의



(3) 투자증권

- 투자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을 말하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는 유동자산으로 표시하고,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초과이거나 1년 후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기타장기투자증권 등은 투자자산으로 표시합니다.



표 4-3 투자증권 계정과목 내역

투자증권	설 명
채무증권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취득한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지분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또는 조합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예: 보통주, 우선주 등) •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신주인수권 또는 콜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 풋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기타장기투자증권	자금운용 또는 법령 및 정책적 목적이 아닌 국제 물납 등 기타사유에 따라 취득한 유가증권

(4) 기타투자자산

- 기타투자자산은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투자자산을 의미합니다.



표 4-4 기타투자자산 계정과목 내역

기타투자자산	설 명
투자회원권	사용 및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회원권(예: 골프회원권)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이란 국공채, 통화,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예: 선물, 옵션, 스왑)
신탁사업수익권	부동산 신탁 등 신탁의 이익을 기대하고 설정한 수익권
기타의기타투자자산	투자회원권, 파생상품자산, 신탁사업수익권에 속하지 않는 기타투자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2년이어서 투자 자산으로 기록하였는데 1년이 지나서 만기가 1년 이내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하죠?

매 회계연도 말에 각 상품들에 대해서 만기를 다시 조사하여 1년 이내 현금화 될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바꿔 표시해 줍니다. 회계적 용어로는 '유동성 대체' 라고 합니다. 부채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표 4-5 일반유형자산 계정과목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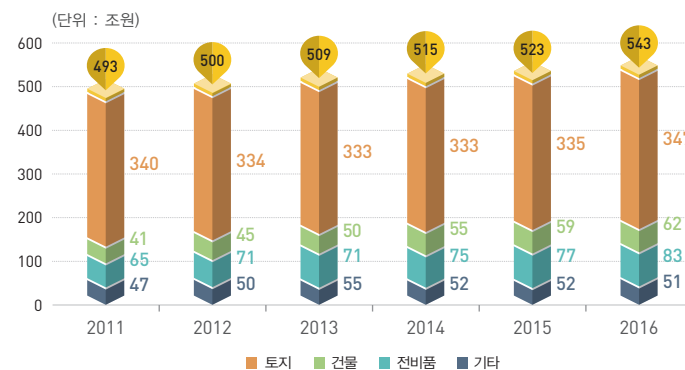
일반유형자산	설 명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건물	청사, 관사, 출장소, 주택 등
구축물	교량, 궤도, 저수지, 정원설비 등
전비품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군사장비와 탄약 등
기계장치	배전반, 전동기, 변압기 등
집기·비품	책상, 의자, 컴퓨터, 가전제품 등
차량운반구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원동기 등

- 일반유형자산 중 전비품과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3항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은 국가의 행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사 등 건물, 청사 등을 짓기 위한 토지 및 구축물, 집기와 비품, 차량운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4-4 연도별 일반유형자산 규모



* 기타: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죠?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4,716억원)이며,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정부세종청사 2단계(4,263억원)입니다.

(단위 : 억원)

순 위	건물명	장부가액	비 고
1	정부세종청사 1단계	4,716	세종특별자치시
2	정부세종청사 2단계	4,263	세종특별자치시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008	광주광역시 동구
4	국회의원회관	2,2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정부대전청사	2,263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세종청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장부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죠?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물품 중 장부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4호기 누리와 미리(442억원)이며,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관세청의 국가종합정보망 운영서버 1호기(402억원)입니다.

(단위 : 억원)

순 위	건물명	장부가액	부처명
1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과 미리)	442	기상청
2	국가종합정보망 운영서버 1호기	402	관세청
3	국가종합정보망 운영서버 2호기	120	관세청
4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73	관세청
5	3차원 스캐너	58	행정자치부



[슈퍼컴퓨터 4호기 '누리']



[슈퍼컴퓨터 4호기 '미리']



- 무형자산이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무형자산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형자산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는 권리입니다.



표 4-6 무형자산 계정과목 내역

무형자산	설 명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내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프트웨어	·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 ·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
기타무형자산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무형자산으로서 국가의 행정목적 등으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고 국가에서 행정활동에 이용하는 자산
(무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국가에서 이용할 권리가 있는 자산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죠?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관세청의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1,007억원)입니다.

(단위 : 억원)

순 위	무형자산	취득가액	취득년월	부처명
1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	1,007	'16.05월	관세청
2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1단계, 2단계)	875	'15.07월	국세청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53	'06.12월	기획재정부
4	취업후 학자금상환전산시스템	301	'11.12월	국세청
5	나라장터(G2B)시스템	172	'03.09월	조달청

4. 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형성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로 건설하고 파급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및 댐 등의 유형자산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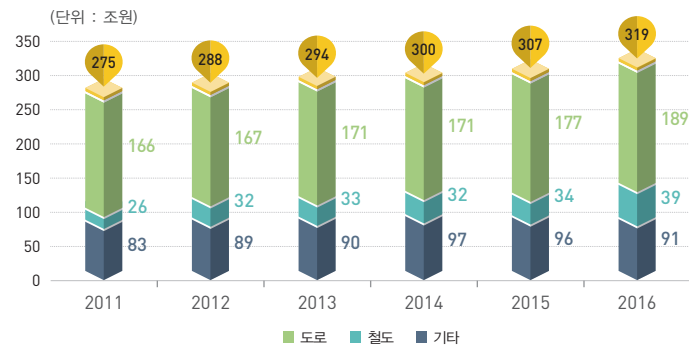


표 4-7 사회기반시설의 계정과목 내역

사회기반시설 종류	세부내역	관련법령
도로	일반국도, 고속국도	도로법
철도	일반철도(광역철도포함), 고속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항만	지정항만	항만법
댐	다목적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공항	공항시설	공항시설법
상수도	광역상수도	수도법
하천	국가하천	하천법
국가어항	국가어항	어촌·어항법



그림 4-5 연도별 사회기반시설 규모



* 기타: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전에는 어느 보고서에서도 금액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경우 재무제표와 분류 방식은 다르더라도 국유재산관리운동보고서, 물품관리운동보고서에서 금액으로 보고되고 있었지만,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여 금액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의 금액보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은 현금화가 되지 않는 자산이며(향후 매각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 도난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기타의 자산과는 달리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국가회계에서 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뿐만 아니라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로 인하여 현금 유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Q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고속도로 중 장부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지?



A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고속도로 중 가장 장부가액이 높은 것은 서울~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109,480억원)입니다.

(단위 : 억원)

순 위	도로명	장부가액	비 고
1	경부고속도로	109,480	서울~부산
2	서해안고속도로	65,391	서울~목포
3	남해고속도로	62,891	부산~순천
4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53,659	하남~통영
5	당진·영덕 고속도로	52,716	당진~영덕

5. 장기충당부채(연금, 보험, 보증, 소송)

-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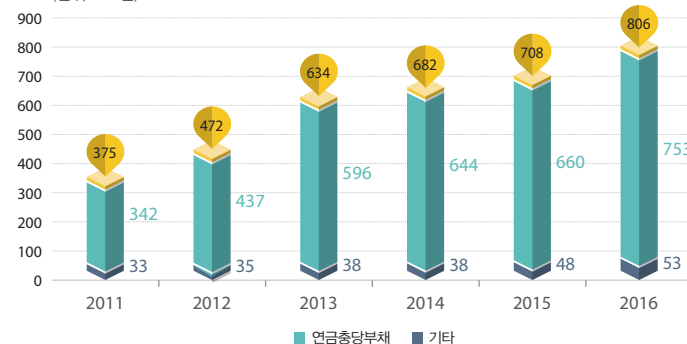
표 4-8 장기충당부채의 종류

(단위 : 억원)

장기충당부채	세 부 내 역	2016회계연도 금액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6,777
	퇴직보험예치금	(1,685)
	국민연금전환금	(1)
	퇴직연금운용자산	(973)
연금충당부채	공무원연금충당부채	6,005,091
	군인연금충당부채	1,520,955
보험충당부채		10,083
	보증충당부채	51,107
기타장기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443,788
	소송충당부채	20,631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2,694

그림 4-6 연도별 장기충당부채 규모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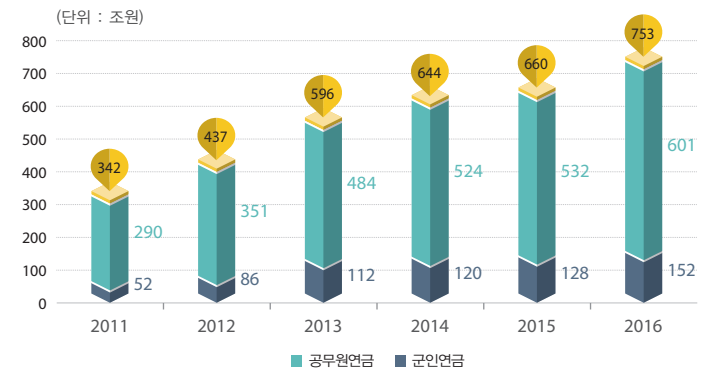
* 기타: 퇴직급여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기타장기충당부채

(1) 연금총당부채

- 연금총당부채는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총당부채로서 현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연금총당부채 설정 대상입니다.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근로의 대가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미래에 지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발생한 금액을 추정하여 총당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래에 추정되는 연금지급액 전부를 연금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연금총당부채로 인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하지만, 미래에 받을 연금 금액을 추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예로 들면, 입사 후 언제까지 근무를 할지, 어느 직급까지 승진을 할지, 급여 상승률은 어떻게 될지 등의 요소에 의해 연금 금액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연금총당부채를 계상하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정해 내야 하며 보통 과거 경험치를 기초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추정하여 총당부채를 산정해 내는 방법을 보험수리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연금총당부채의 평가 방법에는 예측급여채무(PBO: Projected Benefits Obligation) 방식, 누적급여채무(ABO: Accumulated Benefits Obligation) 방식, 보장급여채무(VBO: Vested Benefits Obligation) 방식이 존재합니다.
- 예측급여채무(PBO) 방식은 연금수급권의 획득여부와 무관하게 연금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미래 급여상승분을 반영하여 연금총당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반면, 누적급여채무(ABO) 방식은 연금수급권의 획득여부와 무관하게 연금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미래 급여상승분이 아닌 현재 급여수준을 반영하여 연금총당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또한, 보장급여채무(VBO) 방식은 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만 현재 급여수준을 반영하여 연금총당부채를 산정합니다.

- 우리나라는 2013회계연도 이전까지는 연금총당부채 인식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보장급여채무(VBO: Vested Benefits Obligation) 또는 누적급여채무(ABO: Accumulated Benefits Obligation) 방식으로 연금총당부채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2013회계연도부터 예측급여채무(PBO: Projected Benefits Obligation)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연금총당부채를 산정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 및 민간 기업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림 4-7 연도별 연금총당부채 규모



-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고용주체가 아니며, 해외사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성격에 대하여 총당부채를 산정하여 공개하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연금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2011회계연도부터 필수보충정보인 연금보고서를 통해 향후 연금 수입액과 연금 지출액을 추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보험충당부채

- 보험충당부채는 국가가 제공하는 보험사업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로서 현재 농업재해재보험기금 및 무역보험기금 등이 그 대상입니다.
- 보험충당부채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부채로 계상하지 못하는 부분과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 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즉, 보험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보험사건으로 인해 지출 금액과 지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출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추정하여 지급을 준비하여야 할 금액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3) 보증충당부채

- 보증충당부채는 국가가 제공하는 신용보증사업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로서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이 그 대상입니다.
- 국가의 신용보증사업은 일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시 신용부족 등으로 차입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금융기관 등에 지급을 보증하는 사업으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 보증충당부채는 약정 등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건으로 국가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부담하게 될 추정금액을 현재가치로 인식하게 됩니다.



표 4-9 연도별 보험충당부채 및 보증충당부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보험충당부채	5,698	6,354	6,818	4,926	7,201	10,083
보증충당부채	23,898	26,874	31,666	37,627	44,688	51,107

(4) 소송충당부채

-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금액을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 소송충당부채는 회계연도 결산일(12월31일)부터 1년 내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송의 소송가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정부가 1·2심에서 패소해 최종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거나 1심이 진행 중이어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소송 등을 말합니다.
- 2016회계연도 정부가 피고인 소송 건수는 4,742건 입니다. 부처별로는 법무부가 1,5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재정부(550건), 금융위원회(456건), 국토교통부(352건) 등의 순으로 소송 건수가 많습니다. 법무부의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법무부가 부처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 2016회계연도에 정부가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해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한 금액은 2조 631억원입니다.



충당부채를 인식함으로써 확정채무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재정상태 파악이 가능합니다. 충당부채로는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등이 있습니다.



표 4-10 연도별 소송충당부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건수 (단위: 건)	5,816	6,640	5,225	8,366	5,068	4,742
금액 (단위: 억원)	*	*	*	20,494	14,461	20,631

(*) 2013년도까지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소송충당부채로 계정과목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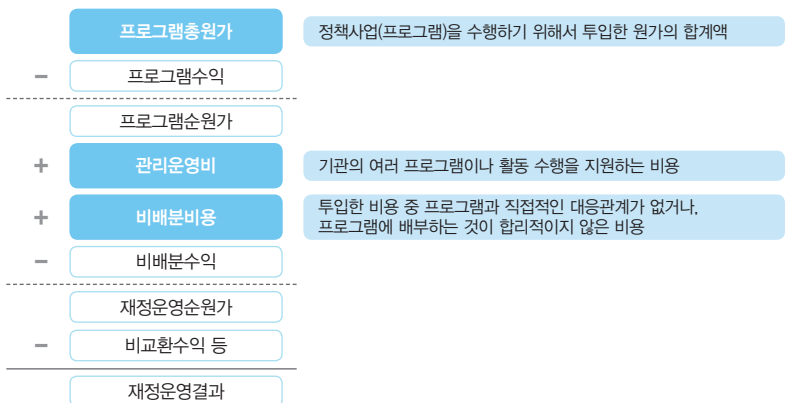
02절 재정운영표

1. 재정운영표에 나타나는 비용의 종류

- 중앙관서별 재정운영표를 통해 보고되는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먼저 프로그램총원가는 국가의 정책사업 단위인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말합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비용이기에 '원가'라고 구분하고 재정운영표의 가장 첫 머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 다음 관리운영비는 기업의 판매비·관리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정부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나 소모품비와 같은 행정운영경비가 관리운영비로 구분됩니다.
- 마지막으로 비배분비용은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낮아 프로그램총원가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들을 말합니다.



그림 4-8 재정운영표상 비용의 종류 및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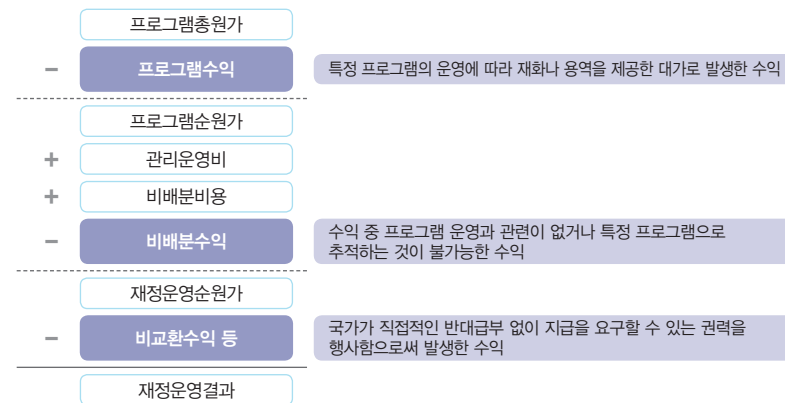


2. 재정운영표에 나타나는 수익의 종류

- 중앙관서별 재정운영표에 나타나는 수익 항목은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 비교환수익 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먼저 프로그램수익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수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복권기금의 복권사업수입을 들 수 있습니다.
- 그 다음 비배분수익은 앞서 설명한 비배분비용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이 낮아서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수익들을 말합니다.
- 마지막으로 '비교환수익 등'은 비교환수익과 무상이전거래를 묶어서 보여주는 수익 항목입니다. 이 중 비교환수익은 국가가 국민에게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익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해 걷어들이 수익 즉, 교환 없이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인세, 소득세와 같은 국세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의 금액만큼 납세자에게 동일한 크기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무상이전거래란 중앙관서 간에 필요에 따라 재원을 이전하고 조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그림 4-9 재정운영표상 수익의 종류 및 설명





3.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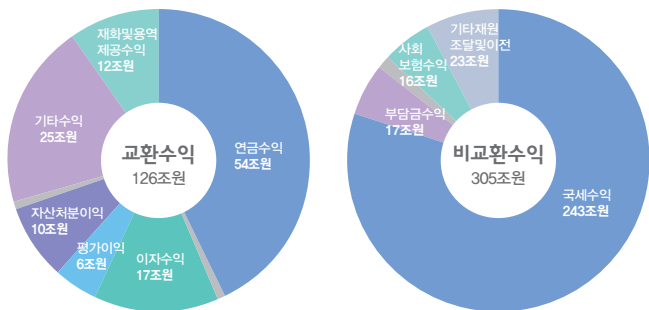
- 수익은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나타나는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말합니다.
- 그런데 국가회계의 특징 중 하나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수납하는 현금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세나 제재금 및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 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현금 등을 수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등을 수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회계는 재화(상품이나 제품 등)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교환수익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등을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회계에서는 수익을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4-10 2016회계연도 교환수익 및 비교환수익의 구성



4. 프로그램순원가의 의미

- 프로그램이란 정부가 시행하는 최소 정책단위로서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개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됩니다. 통상 프로그램은 각 부처의 국(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묶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순원가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차감한 후의 순원가를 말합니다.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 수혜자가 납부(프로그램수익)한 후 원가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며, 이는 일반납세자의 부담분으로 보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프로그램순원가는 자원배분에 관하여 세입세출결산 정보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성과지표와의 연계 등을 통해 개선된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 수혜자가 납부한 후 원가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 즉 일반납세자의 부담분으로 보상될 부분을 의미하며, 프로그램순원가는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사업 평가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4-11 프로그램별 순원가정보의 의미

	20X1년 국립박물관 건설	20X2년 국립박물관 운영	예산지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원가지원은 증가하고 있음
세입·세출 결산	세출: 건설비 100억 세입: -	세출: 운영비 2억 세입: 관람료 1억	• 100억 → 2억 세출축소 • 현금유출입 구분제공
프로그램순원가	5억: 감가상각비 5억(20년)	6억: 감가상각비 5억+ 운영비 2억- 관람료 1억	• 사업 원가정보 및 수혜자 부담분 한번에 확인
성과지표 (성과지표와의 연계)	-	관람객수 100만명 • 순원가 6억/100만명 • 관람료 1억/총원가 7억	• 다른 공공운영시설 사업과 성과비교 • 관람료 적정성 평가

(*)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X1년도에 100억원을 지출하여 박물관을 건설하고 X2년도에 운영비 2억원을 추가 지출한 경우 세출 총액 측면에서 보면 문화향유 분야에 대한 지원이 100억에서 2억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순원가 측면에서 보면 X1년도에 비해 X2년도에는 운영비가 추가 발생하여 오히려 지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람료 1억의 수입을 걷는 경우 세출과 별도로 세입결산서에서는 별도로 보여주지나 프로그램순원가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보여주므로 정보유용성이 커집니다. 프로그램순원가 정보는 사업운영 이후 관람객수와 같은 성과지표에 연계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등을 평가할 수 있고 유사사업과 비교할 수 있어 더 유용합니다.



5. 재정운영결과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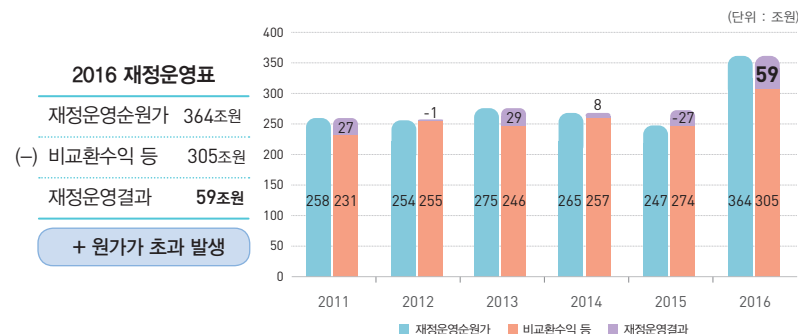
-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전체 재정활동을 통하여 소요된 원가를 나타내며,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재정운영표의 가장 아래에 표시되는 재정운영결과는 국가가 한 해 동안 나라살림을 운영한 결과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즉, 재정운영결과는 국가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크기와 국민으로부터 국세나 부담금 등의 방식으로 거두어들이는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지난 1년간 나라살림 결과를 보여주는 수치인 것입니다.
-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재정운영결과는 기업의 손익계산서 가장 마지막 줄에 나타나는 당기순이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 당기순이익의 경우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기업이 한 해 동안 적은 비용을 들여 큰 수익을 올렸으니 기업운동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국가의 경우 재정운영표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충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정운영표에서는 마지막 줄에 나타나는 재정운영결과보다는 개별사업의 손익을 나타내는 프로그램별 순원가정보가 중요합니다. 물론 수익보다 비용이 커서 재정운영결과가 계속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운영결과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바로 국가재정운동을 잘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운영표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는 표시방법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결과가 부(-)의 수치가 되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의 수치가 됩니다.



그림 4-12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재정운영결과



6. 재정운영결과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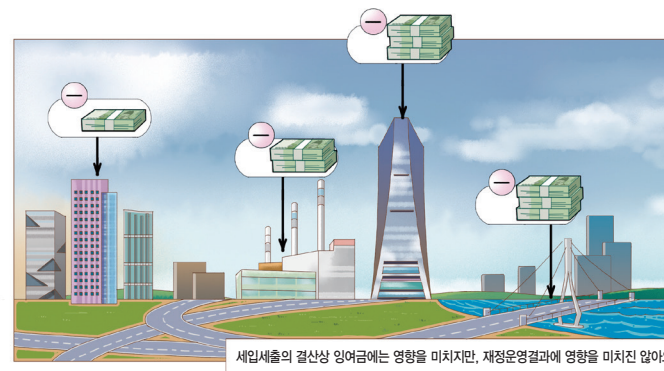
-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국가의 살림살이 운영에 따라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수도 있고,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보다 적어 돈이 남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그렇다면 재정운영결과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재정운영결과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여 그 결과를 표시해 주는 숫자이고,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하여 현금이 남았는지 부족한지를 표시해 주는 숫자입니다.

-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해 국가살림살이 결과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30조원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는 현금 수입액이 현금 지출액보다 30조원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30조원이 발생했다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현금이 남았다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현금이 남은 원인 중에 국채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으로 현금이 증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기억하실 점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한해 살림살이 결과 현금이 남았다는 의미이지 회계에서의 이익 개념은 아닙니다. 기업의 현금흐름표의 현금증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재정운영결과는 어떤 의미일까요? 재정운영결과는 얼마를 건어 들여서 얼마나 써서 없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정운영결과가 손실이라면 건어들인 것보다 많이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사용은 써서 없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지출을 통해 건물을 건설했다면 현금은 지출되었지만 현금 지출로 건물이라는 자산이 생겼으므로 써서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현금이 지출되었으므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재정운영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림 4-13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그림 4-14 현금지출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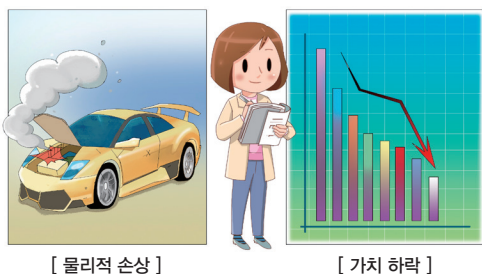
03절 자산·부채의 평가

1. 자산의 평가기준

-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합니다. 즉,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취득이후에 그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이 일어나거나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며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그림 4-15 취득원가보다 장부가액이 낮게 조정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 시장가치의 하락에 따른 감액만 있고, 시장가치의 상승에 따른 재무제표에 가치 증가 표시의 건은 없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증가 표시될 수 있는 예로는 투자목적의 투자증권의 경우와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재평가하는 경우로서,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증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 재정상태표에 기록 시 취득원가를 기초로 기록한 후에는 재평가 등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재정상태표가 공정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유가증권의 평가기준

-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는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 때 공정가액이란 일종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그림 4-16 시가로 평가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 따라서, 투자목적이지 아니거나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유가증권은 취득원가로 표시하게 됩니다. 국가가 보유하는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시세차익의 목적보다는 권리행사의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공정가액 평가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공정가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액 평가 업무가 필요한데, 공정가액 평가 자체도 어렵습니다.



표 4-11 유가증권의 최초 취득시 평가

유가증권의 종류	평가 방법
채무증권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
지분증권	취득원가
기타투자증권	취득원가

(*) 상각후취득원가란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이다. 할인 또는 할증차금은 최초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채무증권을 상각후취득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 수익에 가감한다.

3. 미수채권 등의 평가기준

-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또는 장기대여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합니다.
- 대손이란 상대의 잠적 혹은 파산 등으로 국가가 받을 것을 못 받게 되는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산액을 말합니다. 미래 받지 못할 것을 추정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지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게 됩니다.
- 융자금의 경우에는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 원금과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합니다. 이 차액은 실질적으로 해당 융자사업을 통해 국가실체가 보조해주는 이자비용의 현재가치 금액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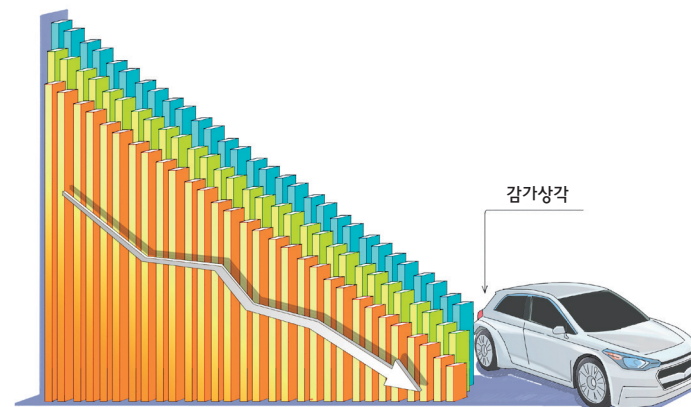
그림 4-17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미수채권 등 평가



4.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하고, 내용연수에 걸쳐서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하고, 내용연수에 걸쳐서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합니다. 이때 내용연수는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가상각(Depreciation)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자산의 가치 감소를 의미하나, 회계학의 관점에서 감가상각이란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allocation)을 의미합니다.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며, 정률법은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대체로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그림 4-18 감가상각



5. 사회기반시설의 평가기준

- 사회기반시설은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준용하여 건물, 구축물 등 세부 구성 요소별로 감가상각을 수행하되,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다른 일반유형자산과는 달리 사회기반시설은 지속적인 수선유지를 통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고 수선유지비용을 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입니다.
- 예컨대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일정기간 후 포장을 다시 하여 영구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의 특징과 감가상각의 목적이 비용 배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용을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현재 국가회계에서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포장물과 국가하천시설 중 제방이 있습니다.



그림 4-19 용역잠재력이 유지되는 경우(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기준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거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5년)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의 경우에는 재평가를 수행하고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공시지가 등)이나 상각후대체원가로 재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상각후대체원가란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경우 투입될 최적의 건설 원가액(재조달원가)에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한 방법을 말합니다.



그림 4-20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사용한 재평가



7. 부채의 평가기준

-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국채는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발행차금 과목으로 액면가액에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그 할인발행차금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에 더하거나 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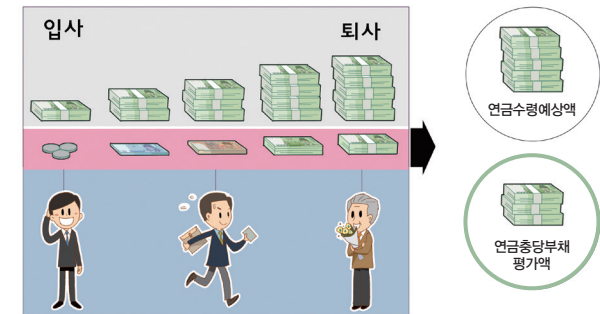
그림 4-21 국채 할인 발행 시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합니다.
-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아 연금을 지급 받는 대상자가 장래 받게 될 연금추정액을 산정한 후 재정상태표일 기간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계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정상태표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및 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개인별 또는 그룹별 예상퇴직시점과 장래 추정보수를 반영하여 관련 연금법에 규정된 급여산식에 따라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한 후 예상 퇴직시점별로 산출된 연금추정지급액에 대해 재직(복무)기간비율 또는 재직(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하여 평가합니다.

-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금'이라는 미래의 의무에 대한 평가금액이 아닌 '현재까지의 근무를 통하여 권리가 생긴 연금 급여분'인 현재의 의무에 대하여 미래상황을 고려한 평가금액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4장. 1절. 5. (1)연금충당부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4-22 연금충당부채 평가방식



미래 퇴직 후 받을 연금수령 예상액을 근무기간 동안 안분하여 부채로 인식

-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 순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산정 시 장래 현금유출시기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자의 신용위험, 경험손실을 및 예상손실을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손실예상액을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봅니다.
- 보험충당부채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확정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으로 구성됩니다.

8.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기준

-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를 말합니다. 자산과 부채가 일정화폐액(예를 들어 100달러)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 환율의 등락에 따라 수취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재정상태표일 현재 환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합니다.
-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화폐 평가액이 변동하는 자산과 부채를 말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해당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비화폐성으로 분류합니다.
-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취득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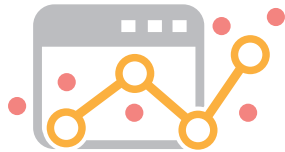
표 4-12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

구분	설명
화폐성 항목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 현금 및 대부분의 채권/채무
비화폐성 항목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부채.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환율 변동에 관계 없이 해당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는 비화폐성으로 분류(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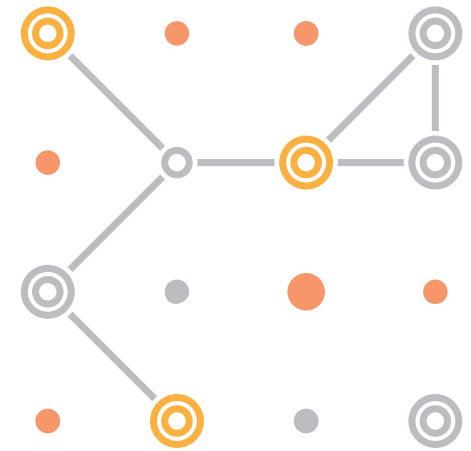
9.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 리스는 일정 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리스는 간단히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이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 한마디로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한 후 그 리스자산에 대하여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경우 등은 할부로 자산을 구매한 것과 유사하므로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리스 시작할 때부터 자산과 부채를 기록합니다.
- 금융리스는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합니다. 이 때 내재이자율이란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및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합니다.
- 금융리스계약인 경우 리스자산으로 계상된 자산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분류되는 해당 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며, 리스부채 역시 부채의 상환금액과 이자비용의 현재가치로 매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반면, 운용리스는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부된 리스료를 각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Government Accou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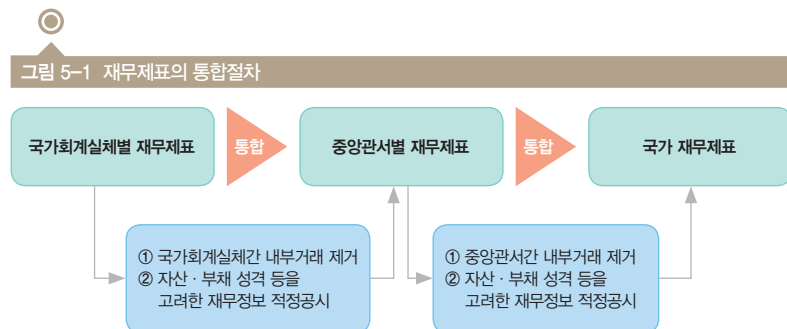
기타 특수한
회계처리



1. 국가 재무제표와 내부거래 제거

-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정책결정자, 국회 및 일반국민 등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에게 각 회계 및 기금 단위뿐만 아니라 중앙관서별 및 국가전체의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우리나라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국가의 행정활동 등을 위한 55개의 중앙 부처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중앙관서별로 일반회계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14개의 회계와 기금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중앙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재무제표 작성의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한 후 중앙 관서의 통합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거래 제거를 통하여 상호 발생한 채권·채무, 수익·비용 및 재원의 조달·이전을 제거합니다. 또한 국가 전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국세징수활동표와 국고금회계의 금액도 통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결과를 알려주는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됩니다.

-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한 후 내부거래 제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부거래제거란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보고실체의 재무제표상 중복계상을 방지하고 각 보고주체별(중앙관서, 국가)로 보다 정확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결과를 보여주는 회계처리입니다.
-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정부출연금 10억원을 기금에 지출한 경우 기금은 수익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통합과정에서 내부의 회계실체간 손익거래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수익과 비용이 중복으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부거래제거에는 위에서 예를 든 수익·비용간 내부거래 외에 재원의 조달·이전 내부거래와 자산·부채의 내부거래 등이 있습니다.



* 자료출처: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실무해설1

표 5-1 2016회계연도 내부거래 주요 계정과목 및 금액

(단위 : 조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유동성정부내장기예수금	27.1	정부내단기예탁금	27.4
정부내단기예수금	0.3		
정부내장기예수금	63.5	정부내장기예탁금	63.5
고용주부담금/공무원연금수익	2.5	공무원연금부담비/원가	2.5
특별회계전입금	3.2	기타특별회계전출금/무상이전지출	3.1
		일반회계전출금/비교환수익등	0.1
정부내자산수증	10.9	정부내자산기부	10.9
기금전입금/비교환수익등	1.2	기금전출금/비교환수익등	1.2
기타재원조달/재원의조달	4.6	기타재원이전/재원의이전	4.6

2.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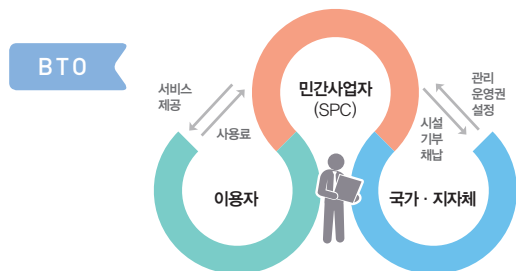
- 국가는 도로, 학교, 병원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등에 대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확충·운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여러 가지 방법의 민간투자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많은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방식도 건설되는 시설에 따라 BTO, BT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후, 사용자 등 운영(Operate)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대해서 채택하는 민간투자 방법입니다.



그림 5-2 수익형 민자사업(B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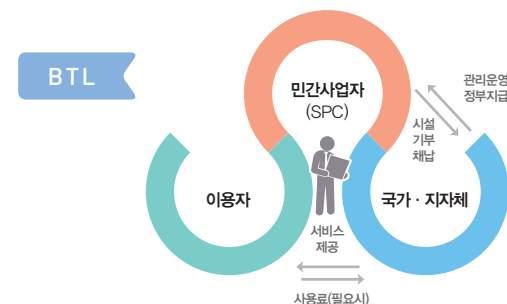
- BTO방식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 준공 후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자산을 넘기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은 자산의 차감계정인 사용수익권으로 계상합니다. 사용수익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상각합니다.

(2)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

-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후, 정부가 시설임대료(Lease)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학교, 문화시설 등 수요자(학생, 관람객 등)에게 사용자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림 5-3 임대형 민자사업(BTL)



- BTL방식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을 임차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대료를 실질적인 자산의 취득대가로 보아 할부로 시설물을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 민간투자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임대료 지급액의 총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임대료 지급액의 총액과 민간투자비와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처금으로 계상합니다.



표 5-2 연도별 BTL미지급금 규모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BTL미지급금	-	-	4,316	5,271	5,671	5,355

(*) 2012회계연도까지는 BTL임대료를 '기타의 장기미지급금'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었는데 별도 계정과목으로 관리할 필요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계정과목 신설

3. 국유재산위탁사업 회계처리

- 국유재산위탁사업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합니다.
- 그 대가로 국가는 일정기간 동안 수탁자에게 위탁개발자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국가를 대리하여 위탁개발자산을 처분 또는 임대하게 됩니다. 이때, 처분, 임대 등 개발에 따른 모든 수입은 국가에 귀속되고 수탁자는 국가로부터 개발·관리 등에 따른 보수, 개발비용, 금융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 정상적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가상승과 이자율상승 등에 따라서 당초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준공 전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며, 이러한 '준공 전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서 준공 전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국가는 준공 전에 발생한 개발비용 등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준공시점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또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준공 전 위험' 부담여부에 상관없이 위탁개발사업의 현황 및 발생비용 등에 대해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 5-3 2016회계연도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관련 공시 현황

(단위 : 백만원)

수탁자	사업명	개발의 종류 (시설물 용도)	개발 원금	위탁기간 (예정)	위탁보수			
					개발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	합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세종시 연구청사	연구청사	194,453	2014. 11. 01 ~ 2039. 10. 31 (25년)	2,917	358	-	3,275
	나라키움 저동빌딩	업무 및 근생	43,321	2008. 07. 01 ~ 2038. 06. 30 (30년)	1,309	531	-	1,840
	나라키움 대전센터	업무시설	76,997	2009. 09. 01 ~ 2039. 08. 31 (30년)	1,542	401	-	1,943
	⋮	⋮	⋮	⋮	⋮	⋮	⋮	⋮
합계			333,869		6,569	1,525	-	8,094

4.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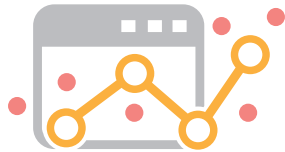
-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이관 등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자산·부채 및 순자산을 이관·승계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정부조직개편일을 기준으로 개편일 전일의 자산·부채 및 순자산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이관하고 승계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이관하고 승계하는 자산·부채 및 순자산은 재정상태표에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이관은 취득이나 처분과 같은 거래가 아닌 일괄 승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이관하고 승계하는 순자산은 관련 자산·부채에 대응시키고,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으로 반영합니다.
- 2017회계연도 조직개편 시에는 6개 기관이 신설되고, 5개 기관이 폐지되며, 3개 기관에서 일부 직무를 이관하였습니다.



표 5-4 2017회계연도 정부조직 개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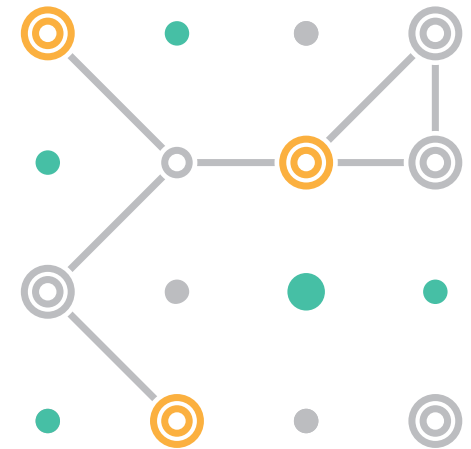
신설 (6개)	폐지 (5개)	직무이관 (3개)
대통령경호처 중소기업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경호실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Government Accounting



2016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가회계실체 현황(2017년 11월말 현재)





별첨 1. 2016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정부

(단위: 원)

관련 페이지	주석	2016	2015
자산			
p.62	I. 유동자산	367,393,916,698,099	352,637,007,954,433
	1. 현금및현금성자산	49,772,910,640,597	44,529,068,753,726
	2. 단기금융상품	45,121,442,984,900	52,226,562,289,059
	3. 단기투자증권	189,356,142,600,492	160,694,132,912,632
	4. 미수채권	54,150,170,283,220	50,905,611,085,018
	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10,399,627,280)	(9,994,147,356)
	미수채권대손충당금	(22,646,841,797,362)	(19,536,761,376,048)
	5. 단기대여금	21,425,924,547,764	37,236,204,207,161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594,508,487,694)	(1,447,447,340,728)
	6. 기타유동자산	30,819,075,553,462	41,039,631,570,969
p.63	II. 투자자산	727,172,309,994,913	664,833,560,283,736
	1. 장기금융상품	1,250,526,827,109	2,088,325,196,033
	2. 장기투자증권	497,141,198,078,631	457,729,290,055,625
	3. 장기대여금	156,092,351,100,856	135,951,653,566,927
	장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1,555,861,542)	(1,493,563,669)
	4. 장기투자자산	(23,257,614,622,928)	(8,866,133,774,005)
	5. 기타투자자산	95,947,404,472,787	77,931,908,802,825
p.68	III. 일반유형자산	543,212,149,057,776	523,091,500,797,905
	1. 토지	347,018,858,484,485	335,433,489,416,099
	토지사용수익권	(12,478,967,277)	(12,478,967,277)
	2. 건물	74,286,796,706,186	68,969,856,393,994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1,327,951,694,970)	(9,491,846,577,109)
	건물사용수익권	(655,130,135,744)	(658,568,997,512)
	3. 구축물	15,333,396,969,341	13,947,585,562,276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6,924,420,657,633)	(5,978,073,736,639)
	구축물사용수익권	(21,499,455,883)	(28,057,015,171)
	4. 기계장치	9,769,016,585,783	9,195,744,612,567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5,076,977,877,974)	(4,744,423,455,228)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18,429,376,558,964	18,248,283,657,124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8,673,752,743,284)	(8,812,073,896,339)
	집기·비품·차량운반구사용수익권	(2,095,071,333)	(6,729,419,880)
	6. 전비품	122,319,295,375,576	113,476,589,523,066
	전비품감가상각누계액	(39,373,275,296,691)	(36,412,507,247,641)
	7. 기타일반유형자산	10,251,471,935,322	13,309,692,701,342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295,659,290,819)	(1,300,229,776,108)
	8.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9,367,177,633,727	18,157,239,020,341
p.73	IV. 사회기반시설	318,637,591,915,064	306,550,117,734,871
	1. 도로	254,225,412,889,731	236,652,589,654,212
	도로감가상각누계액	(6,252,072,385,005)	(5,040,096,531,036)
	도로사용수익권	(59,380,119,325,742)	(54,469,194,838,000)
	2. 철도	63,038,013,966,439	54,164,121,928,085
	철도감가상각누계액	(10,411,052,704,129)	(7,584,452,274,044)
	철도사용수익권	(13,975,939,344,101)	(12,700,670,766,633)
	3. 항만	20,205,511,724,943	19,539,186,981,150
	항만감가상각누계액	(1,381,024,302,033)	(1,389,839,521,285)
	항만사용수익권	(3,930,839,993,039)	(3,883,364,358,655)
	4. 댐	6,757,562,401,854	6,701,415,820,089
	댐감가상각누계액	(692,360,679,623)	(569,513,883,884)
	댐사용수익권	(3,260,180,264,481)	(3,095,457,148,328)

관련 페이지	주석	2016	2015
	5. 공항	5,682,679,159,821	7,414,048,445,531
	공항감가상각누계액	(414,580,508,589)	(286,728,344,133)
	공항사용수익권	(1,332,794,153,329)	(1,136,379,094,789)
	6. 하천	62,657,399,321,087	65,930,957,722,915
	하천감가상각누계액	(1,876,017,377,022)	(1,420,292,554,823)
	7. 상수도	8,026,678,552,971	7,800,117,632,592
	상수도감가상각누계액	(2,897,142,844,254)	(2,421,977,255,478)
	상수도사용수익권	(3,652,403,158,482)	(3,858,249,151,932)
	8. 국가어항	1,889,331,432,782	1,865,450,280,600
	국가어항감가상각누계액	(364,890,917,357)	(361,110,941,302)
	국가어항사용수익권	(27,389,446,254)	(28,392,857,568)
	9.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1,497,051,069,171	1,475,946,481,730
		6,003,809,868,876	4,727,948,791,587
p.68	V. 무형자산	1,249,619,183,329	1,175,614,653,825
	1. 산업재산권	10,851,887,565	7,686,773,696
	2. 소프트웨어	1,080,065,241,257	1,019,970,055,904
	3. 기타무형자산	158,702,054,507	147,957,824,225
	VI. 기타비유동자산	9,114,117,324,830	7,940,027,735,029
	1. 장기미수채권	6,397,800,183,683	6,173,913,677,679
	장기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950,772,189,646)	(1,081,412,432,130)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331,631,359,958)	(314,222,481,954)
	2. 기타타기타비유동자산	3,988,720,690,751	3,161,748,971,434
	자산계	1,966,779,704,174,011	1,856,227,829,159,799
	부채		
	I. 유동부채	136,935,479,422,993	132,768,220,046,583
	1. 단기차입금	61,164,945,980,074	54,372,807,390,076
	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6,384,431,050,495	59,580,535,277,500
	3. 기타유동부채	19,616,167,710,056	19,072,902,881,080
	기타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230,065,317,632)	(258,025,502,073)
	II. 장기차입부채	456,479,887,017,111	420,963,136,472,564
	1. 국채	526,577,099,433,740	486,844,534,313,620
	국제할증(할인)발행차금	5,855,621,514,787	4,026,018,008,034
	자기국채	(92,386,981,799,665)	(89,341,006,055,676)
	2. 공채	17,424,708,305,490	20,943,421,337,866
	공채할증(할인)발행차금	(12,079,172,478)	1,178,971,332
	자기공채	(4,631,375,402,621)	(5,250,736,421,104)
	3. 장기차입금	3,652,894,137,858	3,730,716,318,492
p.75	III. 장기충당부채	806,846,794,706,199	707,901,599,898,345
	1. 퇴직급여충당부채	411,812,110,724	484,680,553,686
	2. 연금충당부채	752,604,622,326,118	659,926,337,325,625
	3. 보험충당부채	1,008,307,374,963	720,105,110,663
	4. 기타장기충당부채	51,822,052,894,394	46,770,476,908,371
	IV. 기타비유동부채	33,772,194,854,269	31,542,252,569,563
	1. 장기미지급금	13,233,844,797,870	12,700,419,382,698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2,426,585,473,850)	(2,958,992,464,344)
	2. 기타타기타비유동부채	23,001,477,673,271	21,835,879,823,883
	기타타기타비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36,542,143,022)	(35,054,172,674)
	부채계	1,433,034,356,000,572	1,293,165,208,987,055
p.47	순자산		
	I. 기본순자산	441,249,265,498,057	441,153,905,481,516
	II. 적립금및잉여금	48,392,045,615,706	149,176,669,444,752
	III. 순자산조정	44,104,037,059,676	(27,267,954,753,524)
	순자산계	533,745,348,173,439	563,062,620,172,744
	부채와순자산계	1,966,779,704,174,011	1,856,227,829,159,799



2. 재정운영표

당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원)

관련 페이지	주석	2016	2015
p. 84	I. 재정운영순원가	363,448,075,942,963	247,224,516,771,610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0,702,237,765	87,970,494,364
	2. 대통령경호실	77,432,999,294	80,055,985,603
	3. 국회	584,579,948,780	521,627,475,063
	4. 대법원	1,283,595,344,145	1,088,428,412,940
	5. 헌법재판소	42,855,466,255	40,440,900,64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54,369,953,579	326,183,795,810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7,023,190,831	26,115,017,000
	8. 감사원	145,888,002,509	119,653,804,430
	9. 국가정보원	467,597,276,400	471,569,206,850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531,565,886,238	530,006,571,098
	11. 기획재정부(국고금회계 포함)		
	(1) 기획재정부	9,420,257,245,627	2,295,867,037,576
	(2) 국고금회계	(70,392,986,700)	9,349,864,258,927
			76,377,790,690
	12. 미래창조과학부	7,582,973,415,677	2,372,244,828,266
	13. 교육부	54,615,629,254,455	7,293,715,139,180
	14. 외교부	1,895,107,841,227	51,882,511,463,731
	15. 통일부	792,218,621,003	1,849,473,206,199
	16. 법무부	3,496,868,470,562	260,554,811,942
	17. 국방부	39,429,261,175,585	3,153,559,179,856
	18. 행정자치부	39,796,413,495,210	35,230,793,710,663
	19. 문화체육관광부	39,796,413,495,210	37,334,425,369,449
	20. 농림축산식품부	4,614,299,989,077	4,133,216,310,900
	21. 산업통상자원부	10,017,115,405,096	11,073,366,105,553
	22. 보건복지부	6,399,844,390,288	5,932,231,727,404
	23. 환경부	23,548,458,062,877	23,372,900,023,592
	24. 원경부	6,277,484,658,935	6,441,335,712,138
	25. 고용노동부	16,233,742,073,493	16,726,545,112,541
	26. 여성가족부	570,688,833,902	604,795,714,706
	27. 국토교통부	65,763,753,778,440	22,403,839,388,771
	28. 해양수산부	3,783,161,774,853	3,521,347,356,217
	29. 법제처	33,232,873,451	30,770,073,626
	30. 국가보훈처	4,698,562,660,270	4,487,371,520,294
	31. 식품의약품안전처	423,729,173,609	388,746,705,291
	32. 국가인권위원회	28,224,962,039	27,765,131,320
	33. 방송통신위원회	58,394,363,032	58,797,322,647

관련 페이지	주석	2016	2015
	33. 공정거래위원회	136,464,330,859	364,521,535,433
	34. 금융위원회	3,485,664,831,181	3,223,925,653,455
	35. 국민권익위원회	71,799,123,127	64,725,627,582
	36. 원자력안전위원회	85,588,719,455	94,393,273,897
	37. 국세청	2,434,769,524,896	2,362,158,081,865
	38. 관세청	501,233,551,639	562,757,935,771
	39. 조달청	(61,418,577,785)	(91,155,676,988)
	40. 통계청	336,158,653,069	377,216,789,750
	41. 병무청	213,034,203,783	200,798,309,913
	42. 방위사업청	2,190,711,566,890	1,483,647,065,121
	43. 경찰청	10,562,704,352,858	9,943,346,334,561
	44. 국민안전처	3,451,485,689,642	3,283,515,555,869
	45. 문화재청	674,975,994,751	640,099,641,531
	46. 농촌진흥청	1,207,196,507,067	146,976,014,527
	47. 산림청	4,828,535,043,591	1,552,190,317,632
	48. 중소기업청	3,777,548,402,095	2,743,679,586,941
	49. 특허청	(77,305,721,515)	(52,324,514,106)
	50. 기상청	414,653,873,943	377,006,684,136
	5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60,278,432,902	277,109,460,420
	52. 인사혁신처	25,706,605,439,600	(22,228,920,658,515)
	53. 세안금개발청	25,104,791,601	22,367,098,179
	54.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7,647,371,510	4,125,076,548
	55. 내부거래 금액		
	(1) 내부거래 원가	(8,914,996,338,258)	(8,867,871,718,328)
	(2) 내부거래 수익	8,914,996,338,258	-
			8,867,871,718,328
p. 81	II. 비교환수익 등	304,867,548,205,121	273,946,729,473,274
	1. 국세수익		
	(1) 국세수익	249,643,717,408,821	224,544,873,526,080
	(2) 대손상각비	(6,278,203,174,519)	(6,394,664,728,027)
	(3) 대손충당금환입	29,470,952,323	14,508,618,795
		243,394,985,186,225	218,658,717,295,848
	2. 부담금수익	17,288,115,282,987	16,260,627,787,208
	3. 제재금수익	5,388,275,146,109	5,183,626,376,547
	4. 사회보험수익	8.5) 15,690,663,899,340	14,876,936,773,940
	5. 채무면제이익	55,085,578,389	55,395,266,276
	6. 기타비교환수익	325,445,384,805	379,522,484,269
	7. 기타자원조달및이전	22,724,977,726,866	19,025,903,368,186
p. 84	III. 재정운영결과(-II)	58,580,527,737,842	(26,722,212,701,664)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원)

관련 페이지	주석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전기기초순자산					
		440,901,965,210,727	138,123,223,790,025	(37,704,788,652,051)	541,320,400,348,701
1.	보고금액	441,868,971,786,516	142,476,134,632,324	(37,704,788,652,051)	546,640,317,766,789
2.	회계변경누적효과	(967,006,575,789)	(4,352,910,842,299)	-	(5,319,917,418,088)
II. 재정운영결과			(26,722,212,701,664)		(26,722,212,701,664)
III. 조정항목					
		251,940,270,789	(15,668,767,046,937)	10,436,833,898,527	(4,979,992,877,621)
1.	납입자본의 증감	-	-	-	-
2.	투자증권평가손익	-	-	8,013,184,794,274	8,013,184,794,274
3.	파생상품평가손익	5	-	(33,507,547,646)	(33,507,547,646)
4.	자산재평가이익	-	(314,090,014,067)	8,571,405,035,267	8,257,315,021,200
5.	기타순자산의 증감	251,940,270,789	(15,354,677,032,870)	(6,114,248,383,368)	(21,216,985,145,449)
IV. 전기기말순자산(II+III)		441,153,905,481,516	149,176,669,444,752	(27,267,954,753,524)	563,062,620,172,744
p. 52 V. 당기기초순자산					
		441,153,905,481,516	149,176,669,444,752	(27,267,954,753,524)	563,062,620,172,744
1.	보고금액	442,145,912,057,305	156,150,053,013,061	(27,267,954,753,524)	571,028,010,316,842
2.	회계변경누적효과	(992,006,575,789)	(6,973,383,568,309)	-	(7,965,390,144,098)
VI. 재정운영결과			58,580,527,737,842		58,580,527,737,842
p. 52 VII. 조정항목					
		95,360,016,541	(42,204,096,091,204)	71,371,991,813,200	29,263,255,738,537
1.	납입자본의 증감	-	-	-	-
2.	투자증권평가손익	7	-	14,548,669,639,154	14,548,669,639,154
3.	파생상품평가손익	5,7	-	(22,133,863,463)	(22,133,863,463)
4.	자산재평가이익	7	-	62,485,786,396,239	62,485,786,396,239
5.	기타순자산의 증감	7	95,360,016,541	(5,640,330,358,730)	(47,749,066,433,393)
VIII. 당기말순자산(V+VII)		441,249,265,498,057	48,392,045,615,706	44,104,037,069,676	533,745,348,173,439

별첨 2. 국가회계실체 현황(2017년 11월말 현재)

중앙관서	일반 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포함)	기금
대통령비서실및 국가안보실	○	-	-	-
국회	○	-	-	-
대법원	○	등기특별회계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헌법재판소	○	-	-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	-	-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	-	-	-
감사원	○	-	-	-
국가정보원	○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	-
기획재정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형기금
교육부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외교부	○	-	-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통일부	○	-	-	남북협력기금
법무부	○	교도작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인사혁신처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공무원연금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조성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연륜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농림축산 식품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양곡중점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중앙관서	일반 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포함)	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보건복지부	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립재활원(책) 국립육포병원(책) 국립정신안정센터(책) 국립중앙병원(책) 국립나주병원(책) 국립부곡병원(책) 국립춘천병원(책) 국립마산병원(책)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환경부	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고용노동부	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사업재활기금
여성가족부	0	지역발전특별회계	-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국토교통부	0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주택도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해양수산부	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책)	수산발전기금
법제처	0	-	-	-
국가보훈처	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식품의약품 안전처	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
국가인권위원회	0	-	-	-
방송통신위원회	0	-	-	-
공정거래위원회	0	-	-	-
금융위원회	0	-	-	공적자금상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국민권익위원회	0	-	-	-
원자력안전 위원회	0	-	-	-
국세청	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중앙관서	일반 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포함)	기금
관세청	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조달청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
통계청	0	-	-	-
병무청	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방위사업청	0	-	-	-
경찰청	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찰병원(책)	-
문화재청	0	지역발전특별회계	-	문화재보호기금
농촌진흥청	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
산림청	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책)	-
특허청	-	-	특허청(책)	-
기상청	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
새만금개발청	0	지역발전특별회계	-	-
세월호선체조사 위원회	0	-	-	-
행정안전부	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
중소벤처기업부	0	지역발전특별회계	-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방청	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
해양경찰청	0	교통시설특별회계	-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책) 국립과천과학관(책)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원자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대통령경호처	0	-	-	-
55개	53개	14개*	4개(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14개)	67개

(*) 교통시설특별회계(3개), 지역발전특별회계(22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8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11개), 혁신도시 건설특별회계(19개), 환경개선특별회계(3개)는 여러 중앙관서에 걸쳐 존재(폐지소관 제외)

(**) 밑줄: 2017회계연도에 변동(신설 또는 명칭변경)된 기금

알기 쉬운 국가회계

참여연구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
 이남주 팀장
 한소영 전문연구원
 오예정 전문연구원
 임정혁 전문연구원
 진태호 전문연구원
 문유진 위촉연구원

발행일 2018년 1월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414-2114(대)

웹사이트 www.kipf.re.kr

디자인 기획 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